

법제도 연구

해양유전자원 ABS에 관한 국제 레짐과 지식재산 이슈

International reg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regarding marine genetic
resources ABS

2023. 12.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23년 기본연구 최종보고서

법·제도 연구

해양유전자원 ABS에 관한 국제 레짐과 지식재산 이슈 - BBNJ를 중심으로 -

Legal System

International reg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regarding
marine genetic resources ABS

2023.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양유전자원 ABS에 관한 국제 레짐과 지식재산 이슈 - BBNJ를 중심으로” 기본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 김영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참여연구자 : 양세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요 약

해양유전자원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종 80%를 차지하는 해양이 보유한 유전자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해양유전자원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양에 있어 영해가 있는 반면, 공해와 심해저와 같은 관할권 이원지역이 존재하며 이 지역에 존재하는 해양 유전자원의 비율은 상당하다. 2023년 3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협정안’이 타결되었기에 이에 대한 분석은 더욱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우선 해양생물에 대한 특허활동,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은 먼저 동물(Animalia)이 종의 수 23,454개로 해양생물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서식하는 생물종 수는 인도네시아가 15,509개의 생물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는 필리핀이 14,060개의 생물종 수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 관련 특허 원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우리나라, 일본, 중국)가 1,523건으로 가장 높으며,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가 1,121건으로 파악된다. 또한, 특허 권리에 관한 수요는 북아메리카가 11,595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동아시아(우리나라, 일본, 중국)가 8,408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양유전자원이 활용되는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생물공학 및 약학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상에 대한 내용이다. 본 협정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자간 이익 공유 체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유전자원에 관한 활동의 모니터링과 투명성의 제고를 통하여 이익 공유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일관성을 높여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정은 제3부 해양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과 제4부 환경영향평가의 부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부의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과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절차 역시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금전적 이익 공유와 해양기술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0조를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BBNJ 협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체제의 운영 방안과 절차, 가이드라인 등은 채택 후 개최될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협정안이 채택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협정안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이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4년 WIPO IGC와 관련된 외교 회의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이슈들이 다뤄질 것이다. 결국 BBNJ 협정의 발전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주제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 키워드

BBNJ, 해양유전자원, 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자원, ABNT

CONTENTS

요약문	i
-----------	---

제 1 장 서론	1
----------------	---

제1절 배경과 필요성	3
I. 배경	3
II. 필요성	4
제2절 목적과 추진전략	7

제 2 장 해양생물에 관한 특허활동	9
---------------------------	---

제1절 개요	11
제2절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해양생물다양성	13
I. 서론	13
II. 동남아시아 지역 생물다양성 현황	14
III.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현황	16
제3절 특허활동 현황	19
I. 방법론	19
II. 해양생물 관련 원출원 및 패밀리 특허 현황	20
III. 특허에 주로 이용되는 해양유전자원 및 기술분야	21

제3장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상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BBNJ) 25

제1절 BBNJ 협정 연구 필요성 27

제2절 BBNJ 협정문 주요내용 29

- I. BBNJ 협정 추진경과 29
- II. BBNJ 협정문 구성 및 주요내용 31
- III. 제1부 일반규정 36
- IV. 제2부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40
- V. 제3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46
- VI. 제4부 환경영향평가 50
- VII. 제5부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54
- VIII. 제6부 제도적 정비 56
- IX. 제7부 자원 및 체계~제11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58
- X. 제12부 최종조항 62

제4장 BBNJ협정과 지식재산 이슈 65

제1절 개요 67

- I. 지식재산 조항 삭제 67
- II. 유전자원 이익 공유와 기술이전의 문제 70
- III.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및 분쟁해결 73

CONTENTS

제 5 장 결론	75
------------	----

참고문헌	81
------------	----

표 목차

〈표 1〉 BBNJ 협정문의 구성	32
〈표 2〉 비금전적 이익 공유 유형(제14조 제2항)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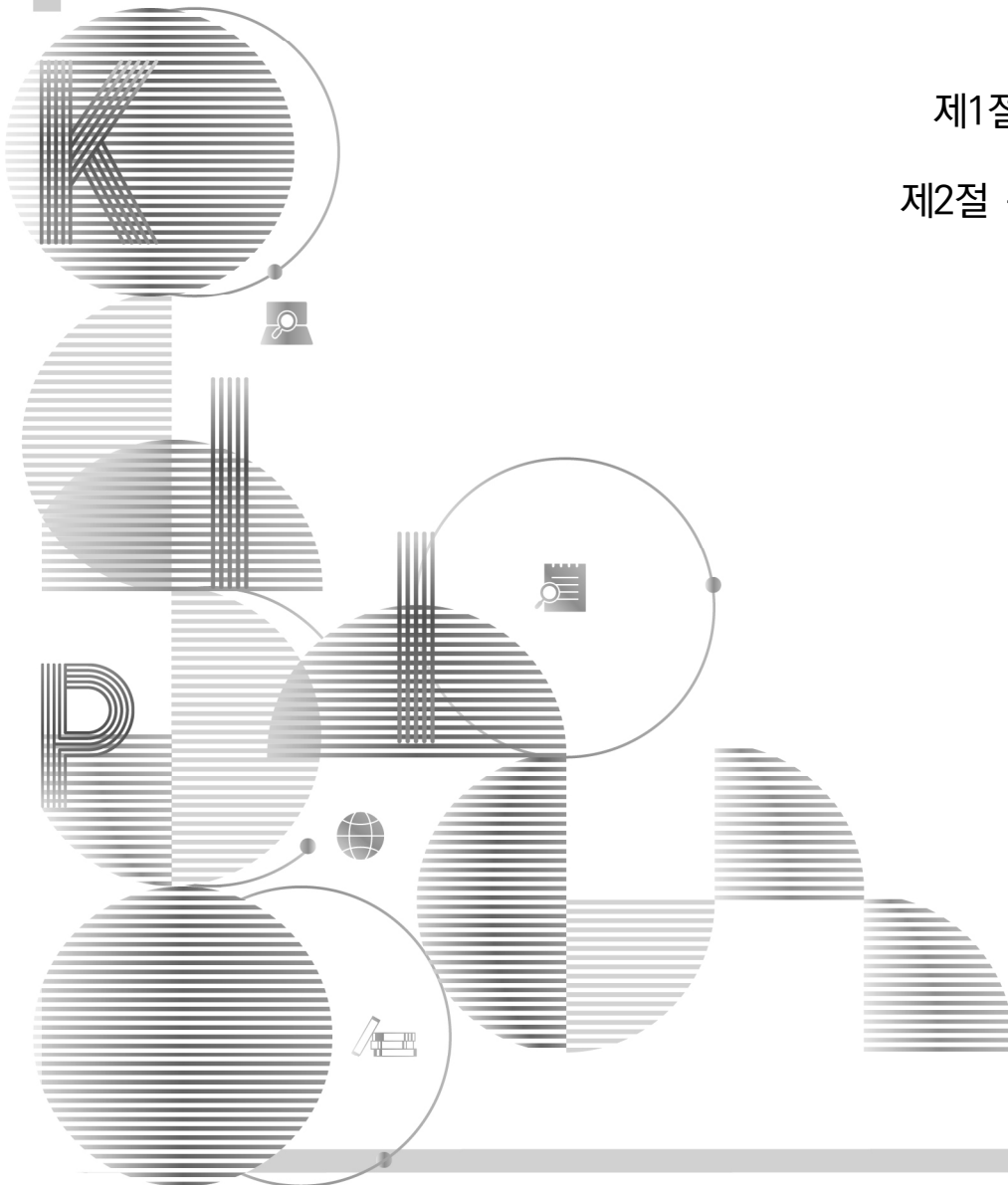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동남아시아 지역 생물다양성 분포	14
[그림 2] 동남아시아 지역 생물 종의 수 및 생물별 종의 수와 등록 건수	15
[그림 3] 동남아시아 국가별 생물종 현황 및 등록 건수	15
[그림 4]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분포	17
[그림 5]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종별 개수 및 생물별 기록 및 관측 건수	17
[그림 6] 동남아시아 국가별 해양생물종 현황 및 기록 건수	18
[그림 7] 지역별 및 국가별 출원건수	20
[그림 8] 지역별 패밀리 특허 동향	21
[그림 9] 종별 특허건수 및 활용된 생물종 수	22
[그림 10] 해양생물 활용 기술분야	23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과 필요성

제2절 목적과 추진전략



배경과 필요성

I | 배경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유전물질로 정의된다. 이는 생물종이 내재하고 있는 유전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유전자는 실용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어, 현재 재배종, 야생종, 원시종과 같이 유용하거나 잠재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가진 다양한 종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전자원은 원래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되었지만, 유전공학의 진보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특히 개도국 등 환경 보존이 잘 이루어진 국가의 유전자원이 무분별한 대가 없이 가져와지고, 이를 개발하여 특허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즉 유전자원에 대한 해적행위 또는 생물자원 수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NGO인 RAFI와 인도의 Vandana Shiva를 중심으로 한 운동은, 선진국의 기업이 특허 및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부당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생물자원 수탈이라고 지칭하며,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유전자원의 부당한 사용은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토착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사용,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993년 12월 29일에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되었다. CBD의 주요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고, 1995년 1월 1일에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로써 국가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는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론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선언적 성격으로 인해 구체적 이

행에 있어 그 한계가 존재하였다.

2002년 CBD 제6차 회원국회의(COP6)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대한 명확한 이행 방안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국내법 및 행정조치에 참고할 수 있는 Bonn Guideline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자발적 지침이라서 구속력이 없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04년 CBD 제7차 회원국 회의(COP7)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레짐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여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제10차 회원국 총회(COP10)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익 공유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나고야의정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익 공유 이행을 위한 조약으로 간주되면서, 각 회원국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입법, 행정절차, 정책 등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년 9월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고, 2014년 7월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또한, 2017년 5월 19일에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2017년 8월 17일부터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은 2017년 8월 17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유전자원의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면서, 생물다양성 주권의 확보는 국제적인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CBD와 나고야의정서 외에도,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 WIPO의 IGC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제조약과 논의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각 국가들 간에 생물다양성에 관한 주권을 놓고 한차례의 이해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II | 필요성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 간 이해 충돌과 국제적 무대에서의 다양한 논의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협상인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BBNJ)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해양유전자원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해양은 지구 생물종의 80%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활용률은 1% 미만에 불과하여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유전자원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며,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 소재활용 기반 구축 연구개발 사업(2021~2025)’을 발표하여 해양유전자원의 발굴, 정보 고도화, 기업 상용화 연구지원 등을 통해 해당 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미래의 가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발견 잠재성과 함께, 해양유전자원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소재로 간주되어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에 위치한 많은 해양유전자원은 BBNJ의 주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며, BBNJ는 해양유전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현재까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국가관할권 지역 내에서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에 관한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해양유전자원은 주로 관할권 이원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ABS 시스템을 이 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현재까지는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진행 중이며, 이는 U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영토나 영해가 아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협상이 U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논의들이 국가 주권 내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에 관한 것이었다면, BBNJ는 국가 주권 외의 지역인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논의는 새롭게 부상한 것이 아니다. 2006년 비공식 작업반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3월 제5차 정부 간 회의까지 약 17년간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3월 회의에서 문안의 완성을 달성하여 6월에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현재 더욱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셋째로, BBNJ에 대한 관심 중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전자원 ABS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국가 관할권 내의 유전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를 통한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유전자원 ABS 논의는 2001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2024년에 조약이 타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은 BBNJ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식재산적 이슈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관할권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WIPO IGC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여 국가들의 의견 충돌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제를 유추할 수 있으며, 실제로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BBNJ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에 대한 ABS와 지식재산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WIPO의 결정에 따를지, 아니면 BBNJ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할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BBNJ 논의 자체도 파생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등을 포함한 여러 지식재산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BBNJ에 대한 지식재산 중심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에 대한 ABS와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목적과 추진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에 대한 BBNJ의 이론과 구성을 설명하고, 지식 재산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 ①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자원 및 특허활동 동향 조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현황과 관련된 특허활동 동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을 분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② BBNJ 이론과 구성 분석: BBNJ의 이론과 구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행된 제5차 정부 간 회의에서의 주요 쟁점과 결과를 분석하여, 특히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③ BBNJ 관련 지식재산 쟁점 검토: BBNJ와 관련된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출처공개의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제조약에서의 기술이전인 공여 방식의 기술이전에 대한 검토 등을 실시하여, 관련된 지식재산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해양생물자원, BBNJ의 진행과 결과, 그리고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자문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제고하고자 한다:

- ① 특허 동향조사 및 변리사: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풍부한 변리사를 초빙하여 특허 동향조사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술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법률적 측면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의견 교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 ② BBNJ 조사와 분석 및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 BBNJ 조사와 분석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자문단에 참여시켜 정책 및 법률 측면에서의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산하기관 BBNJ 담당자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 ③ 지재권 중점 분석과 특허청 공무원 및 변리사: 특허청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담당자를 초빙하여 지재권 중점 분석에 대한 국내 정책 및 규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변리사의 참여를 통해 법률적 측면에서의 지식재산 규정 및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자문단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연구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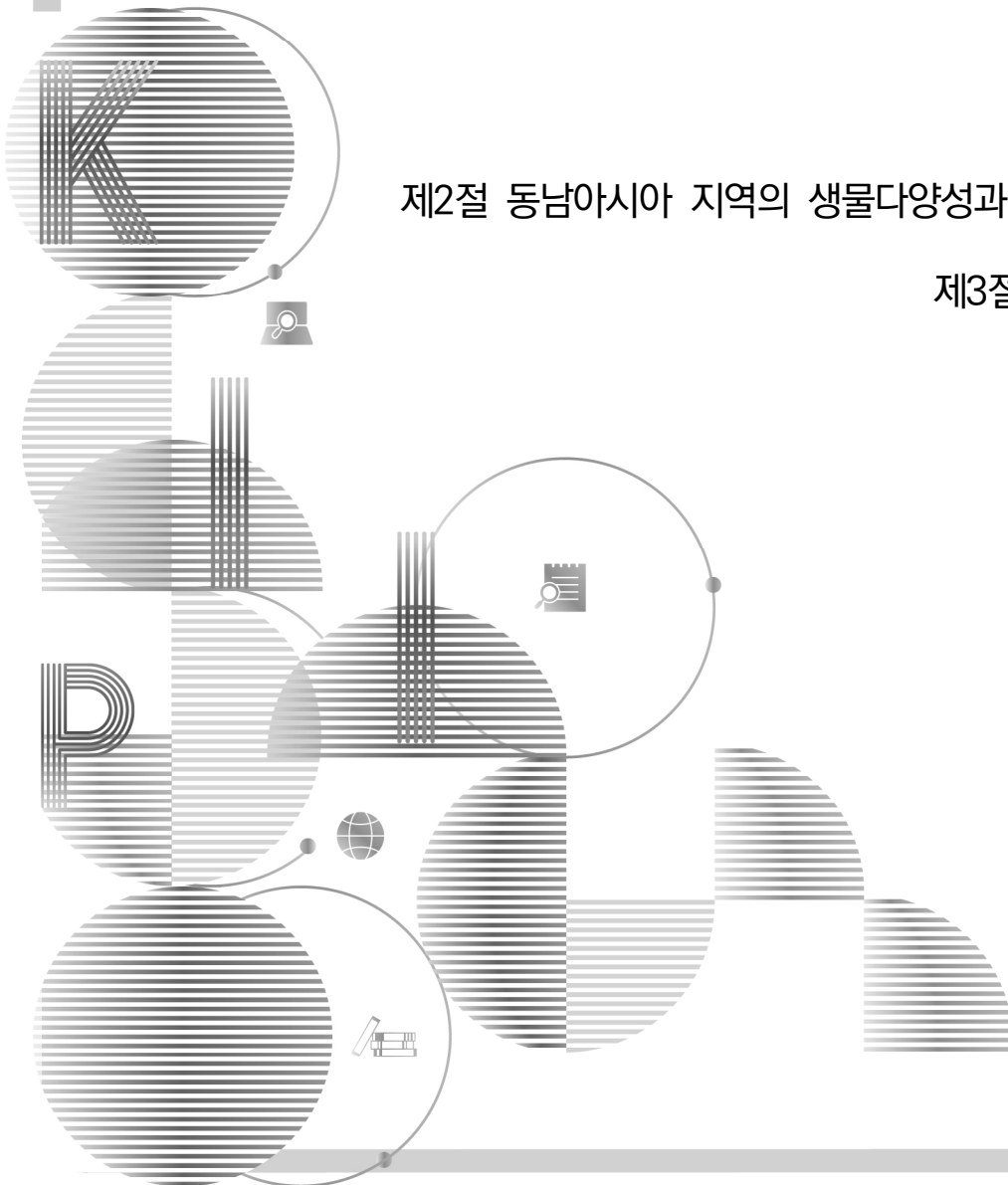
제2장

해양생물에 관한 특허활동

제1절 개요

제2절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해양생물다양성

제3절 특허활동 현황



개요

해양은 지구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생물의 70%가 해양에 존재하는 등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은 36개의 문(living phyla) 중 34개 이상이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유기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해양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종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보는 Arrieta, Jesus 및 Arnaud-Haond, Sophie 등의 연구¹⁾에서 나온 것이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해양 자원은 다양성과 풍부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UN General Assembly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해양의 다양성은 새로운 화합물 및 유기체의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²⁾ 또한, 이러한 발견들은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및 과학 산업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생물자원은 생태계에 대한 높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규 발견된 화합물은 의학 및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 있어, 해양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은 그 규모와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2011년 기준으로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세계해양생물종등록소, 이하 WoRms)에 현재까지 해양생물로 등록된 종의 수는 219,714개로 알려져 있으며, 추정되는 종의 수는 약 870만개(오차범위 +/-130만개)에 이른다. 또한, 같은 시기의 해양생물 관련 특허 문건은 약 6,000만 개에 달한다.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가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이하 GBIF)이다. GBIF는 2001년 3월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정보에 대한 범세계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이다. GBIF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 공평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노력하며, 참여 회원국 간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은 여전히 실질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1) Arrieta, Jesus & Arnaud-Haond, Sophie & Duarte, Carlos. (2010). What lies underneath: Conserving the oceans' genetic resour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 18318-24. 10.1073/pnas.0911897107.

2) UN General Assembly,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A/62/66, March 12, 2007, paras.126-127.

특허에 사용된 해양유전자원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많은 경우에 이용된 유전자원의 출처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출처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연구나 발명에 사용되는 유전자원은 중계인을 통해 공급되거나 현지 외 상태(*ex situ*)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출처인 원산지(원산국)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출처 파악이 어려워진다.

둘째, 특허에 사용된 유전자원이 해양생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 생물은 생애주기의 특성으로 인해 서식지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 육상과 해양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육상생물자원으로 취급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으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특허 문건에 기재된 유전자원의 출처 파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최신 보고서로는 Jesús M. Arrieta, Sophie Arnaud-Haond, Carlos M. Duarte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선행연구인 ‘생물다양성 국제 레짐의 개편과 지식재산권 이슈 분석’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는 1980년대부터 2010년 사이의 정보를 다루고 있어 연구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2019년에 발간된 WIPO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³⁾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체 해양생물자원이 아닌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양생물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의 현황과 관련된 특허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3) 원 보고서는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98> 참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해양생물다양성

I | 서론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70% 정도가 내륙지역이 아닌 해안지역에 터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육지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 산호초의 약 30%, 그리고 맹그로브⁴⁾ 숲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한 해 어량 2,100만 톤을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 어업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 자연·생물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는 지역 내 경제, 생산, 생활 및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 내의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 슈로더가 2022년 7월 동남아시아 전역의 자연 자원에 투자한 사실⁵⁾은 이러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에 동남아시아 지역 391,181건의 관련 과학 논문 및 461,380건의 특허 문서 데이터 검토 기반으로 분석되어 2019년에 발간된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현황과 이와 관련한 특허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WoRms에 기록된 398,000개의 해양생물종 정보와 GBIF에 기록된 수백만 개의 정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해양유전자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⁶⁾

4) 맹그로브(mangrove)는 꽃이 피는 육상식물로서 연안의 염분이 있는 곳이나 기수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나 관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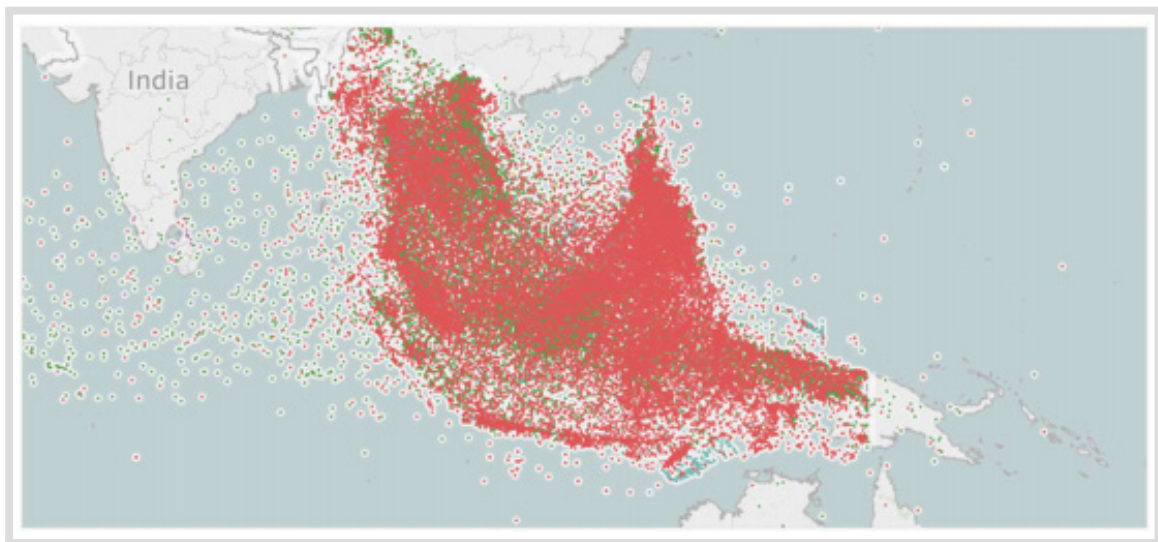
5) 머니투데이, ‘투자자라면...이젠 생물다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2022.10.0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915191793269> 참고.(2023. 10. 10. 최종검색)

6) 또한 Clarivate Analytics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Clarivate Analytics Derwent Innovation patent collections 그리고 EPO의 World Patent Statistical Database (PATSTAT) 2016년 판이 담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II | 동남아시아 지역 생물다양성 현황

‘endemic 종의 수(일정지역 내의 종의 수)’를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순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3월 기준 GBIF 데이터에 따르면 총 6,350,017개의 생물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147,036개의 종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출처로 등록된 것이다.

[그림 1] 동남아시아 지역 생물다양성 분포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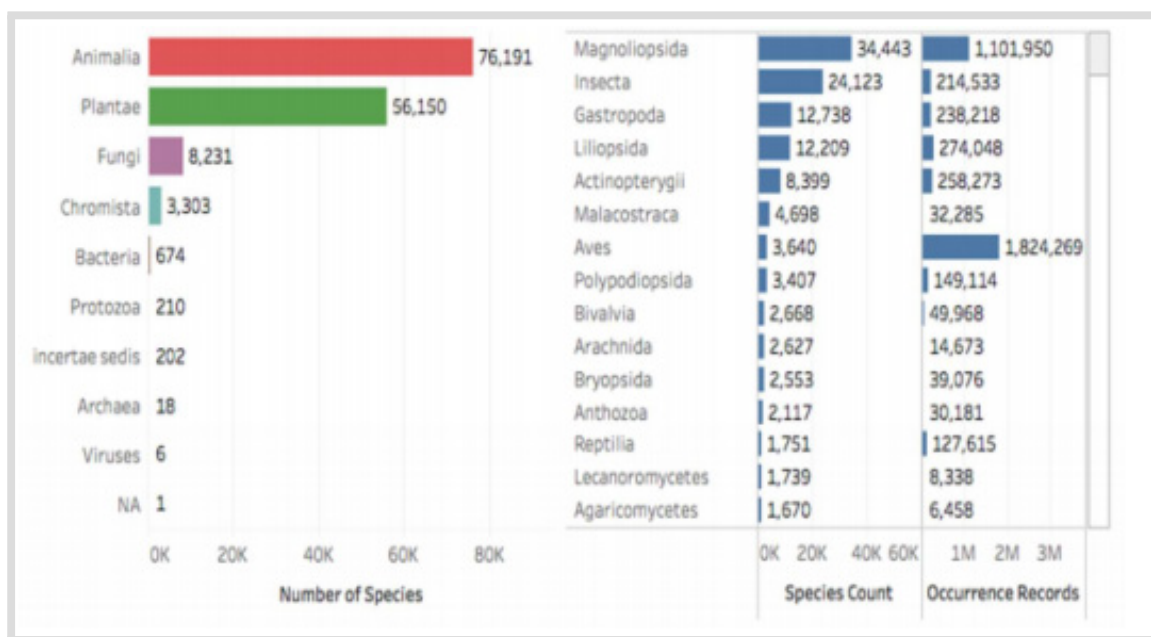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동물(Animalia) 종으로 76,191개의 종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물(Plantae)이 56,150개의 종 그리고 곰팡이(Fungi)가 8,231개의 종으로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

생물별 종의 수와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주로 Magnoliopsida⁷⁾가 종의 수는 34,443개, 등록 건수는 1,101,950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곤충(Insecta)이 종의 수는 24,123개와 등록 건수는 214,533건, 달팽이(Gastropoda)가 종의 수는 12,738개와 등록 건수는 238,218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로는 백합과를 포함하는 백합식물강(Liliopsida) 및 게, 가재 및 새우와 같은 동물 종류인 연갑류⁸⁾(Malacostraca)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속씨식물 중 떡잎이 두 장 나는 쌍떡잎식물강으로 분류되는 식물과임.

8) 절지동물 갑각강 연갑아강의 총칭. 갑각이 발달한 고등 갑각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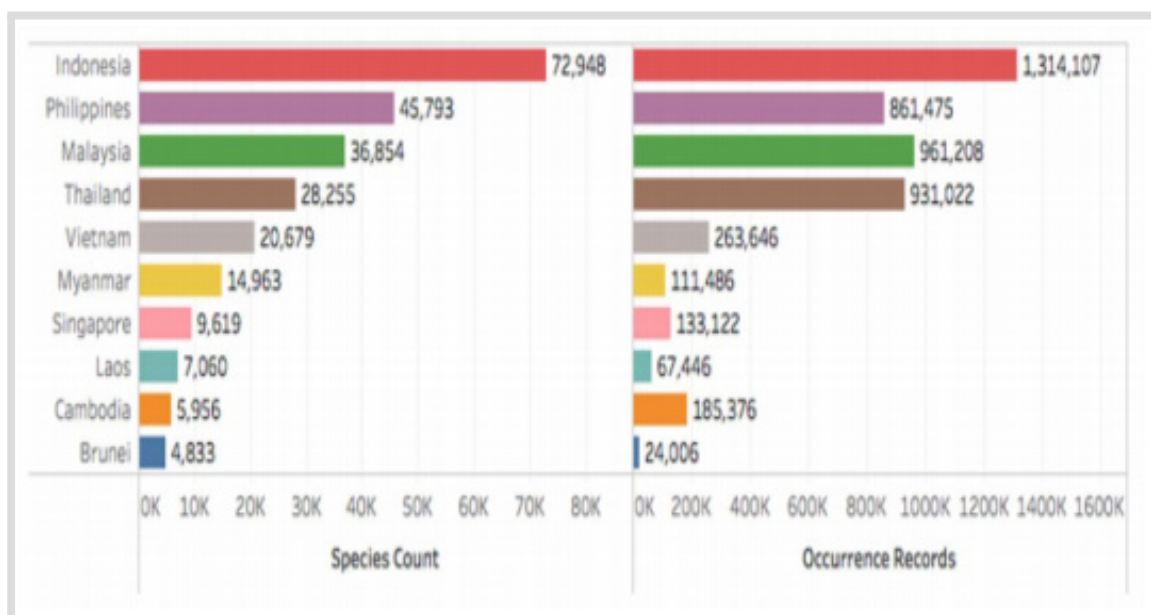
[그림 2] 동남아시아 지역 생물 종의 수 및 생물별 종의 수와 등록 건수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2018년 3월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72,948개의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GBIF에는 1,314,107건을 등록하여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뒤로는 필리핀(생물종 수: 45,793개, 등록 건수: 861,475건)과 말레이시아(생물종 수: 36,854개, 등록 건수: 961,208건) 그리고 태국(생물종 수: 28,255, 등록 건수: 931,022) 순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동남아시아 국가별 생물종 현황 및 등록 건수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III |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현황

실질적으로 전체 생물종에서 해양생물종만을 분류해내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생물종이란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WoRms가 채택하고 있는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종이랄 할지라도 육지, 담수, 민물과 염분수의 경계지역 그리고 해양에서 발견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종이 여러 환경 속에서 발견될 수 있거나, 특정 종의 경우 생애주기의 한 단계에서는 특정 서식지를 차지하고 다른 단계에서는 다른 서식지를 차지할 수 있다.⁹⁾ 따라서 해양 종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WIPO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는 해양생물종을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탐색 후 가능한 육지생물종을 모두 제외하였다. 육지생물종을 제외한 후에는 식물 종의 경우 맹그로브와 같은 염해에 분포하는 식물 종을 제외하고 곰팡이의 경우도 주로 해양에 분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GBIF 데이터에서 해양생물종을 식별하기 위해 WoRms의 해양생물종 이중 명칭 참조 목록을 기반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 목적에 따라 398,000개를 선별하고, 다시금 WoRms의 명칭 참조 목록을 기반으로 28,000 개의 해양생물종명을 식별하였다. 이렇게 식별된 데이터를 Lifewatch Belgium 웹 서비스¹⁰⁾를 통해 검색하여 각 항목의 수치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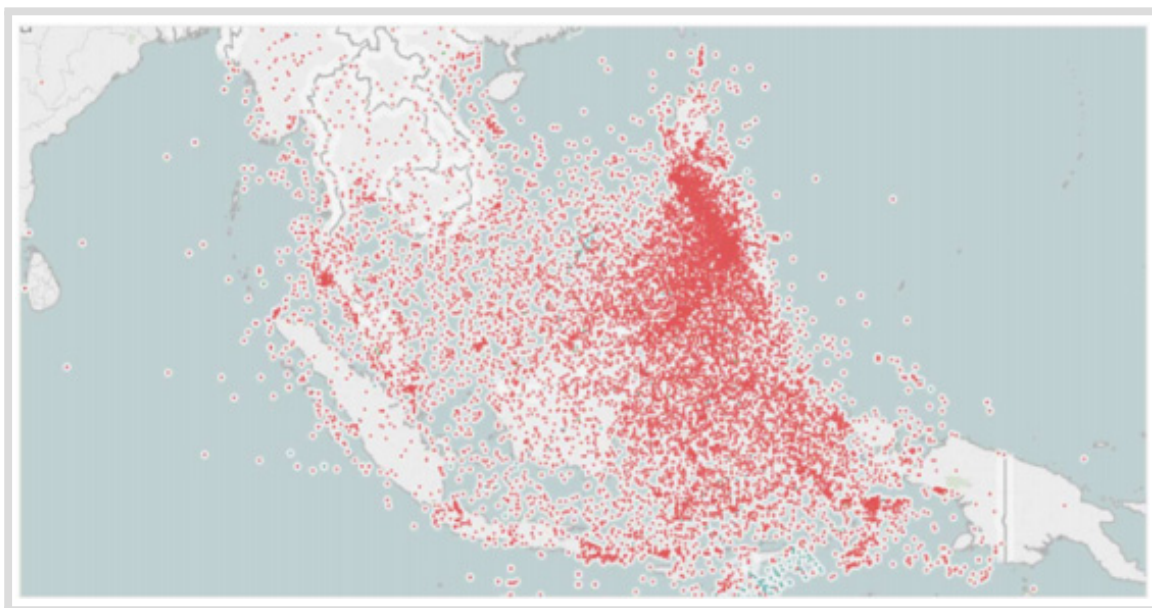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도출된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Animalia)이 종의 수 23,454개로 해양생물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달팽이(Gastropoda)가 상당 부분을 차지(종의 수: 5,775개, 등록 건수: 144,462건)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조기아강(Actinopterygii, 종의 수: 4,695개, 등록 건수: 117,965건), 연갑류(Malacostraca, 종의 수: 3,822, 등록 건수: 23,621건), 이매패류¹¹⁾(Bivalvia, 종의 수: 1,541개, 등록 건수: 31,595건)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9) 예를 들어 모기의 경우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서는 수중에 서식하고, 성체 단계에서는 물에 알을 낳는다.

10) <https://www.lifewatch.be/> (2023. 10. 10.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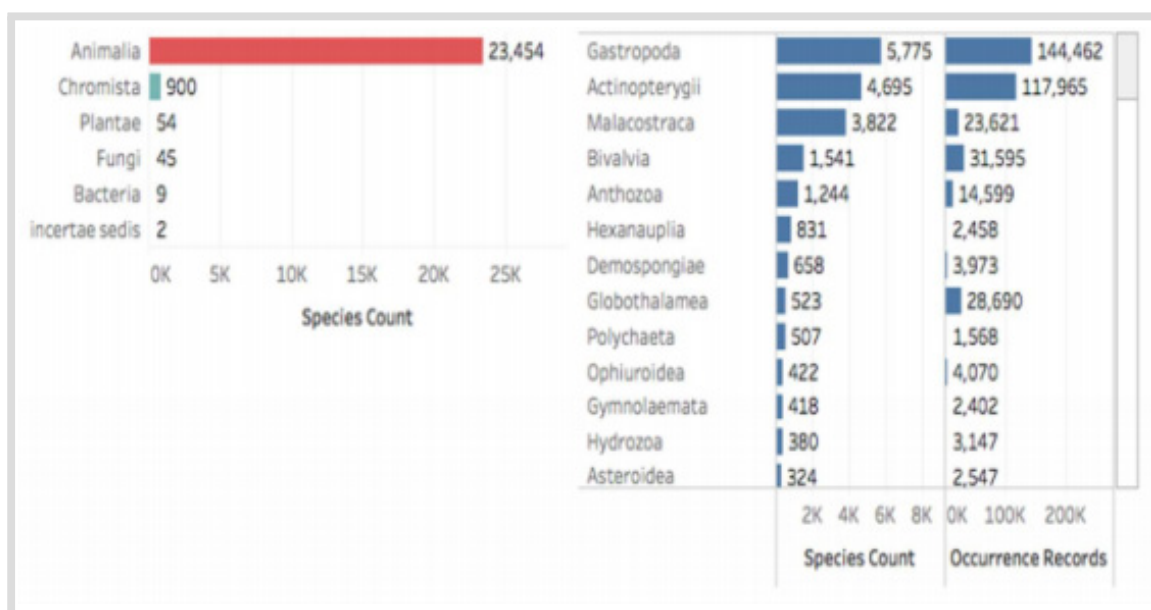
11) 연체동물문(Mollusca) 부족강(Pelecypoda)에 속하며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의 무리를 의미함.

[그림 4]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분포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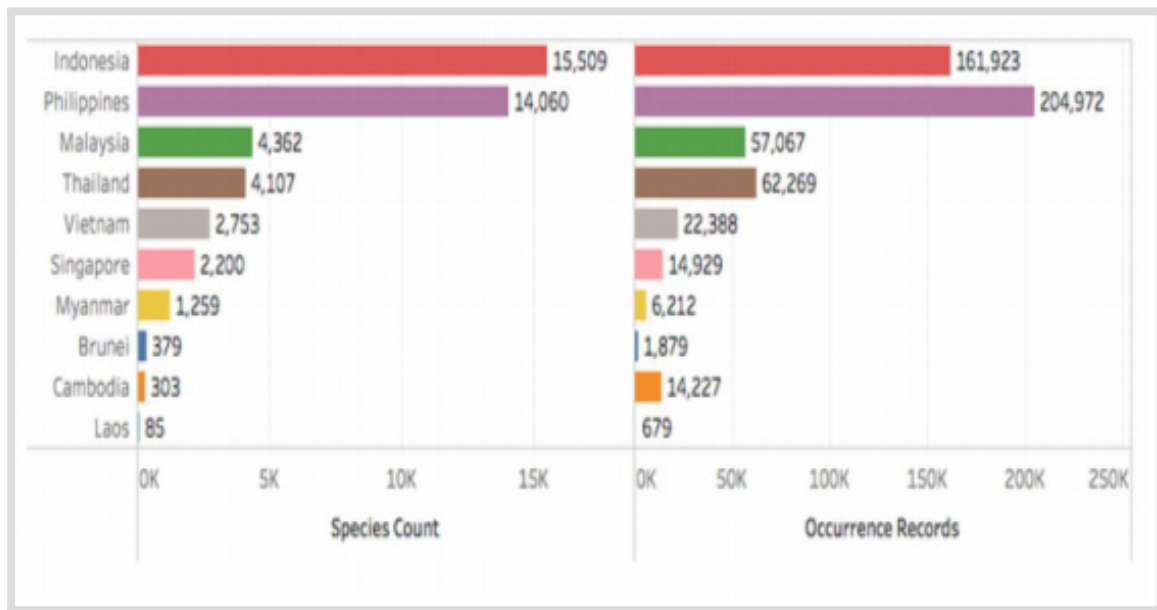
[그림 5]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종별 개수 및 생물별 기록 및 관측 건수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국가별로 서식하는 생물종 수는 인도네시아가 15,509개의 생물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는 필리핀이 14,060개의 생물종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등록된 건수를 기준으로서는 필리핀이 204,972건이며 인도네시아가 161,923건을 보이고 있다. 그 뒤로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6] 동남아시아 국가별 해양생물종 현황 및 기록 건수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특허활동 현황

I | 방법론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 관련 특허활동에 관한 수치를 추출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는 세 단계로 구성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WoRms의 ASEAN 컬렉션의 더웬트 이노베이션(Derwent Innovation)¹²⁾의 제목, 요약 및 청구항을 텍스트 마이닝하여 WoRms의 이중 생물종 이름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02종에 대한 730개의 기본 출원이 식별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는 ABSPAT 지수와 연결된 동남아시아 국가 관련 해양생물 특허활동에 대한 기존 데이터와 결합하였다. 여기서 ABSPAT 지수는 2013년까지의 EPO, USPTO 및 PCT 컬렉션의 특허 문건 전체에서 나온 650만 개의 정보와 국가 이름 및 종 이름 2,140만 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종 이름과 ASEAN 국가 이름을 포함하는 15,376개의 정보가 생성되었고, 이들 중 중복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6,521개의 기본 출원으로 정리되었다. 이 6,521개의 정보를 해양 종 이름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하여 동남아시아 국가 이름과 해양 종을 포함하는 2,033개의 기본 출원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키워드 기반 검색 전략을 추가하였다. WoRms 데이터에는 390,000개가 넘는 상당히 많은 해양 생물종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이름을 포착하는 키워드 검색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때 직접 종 이름을 검색하지 않고 종 이름을 포착할 쿼리를 개발하여 검색의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ABSPAT를 통해 알 수 있던 6,521개의 기본 출원의 텍스트에 대한 실험 결과, 집합의 문서의 98%를 포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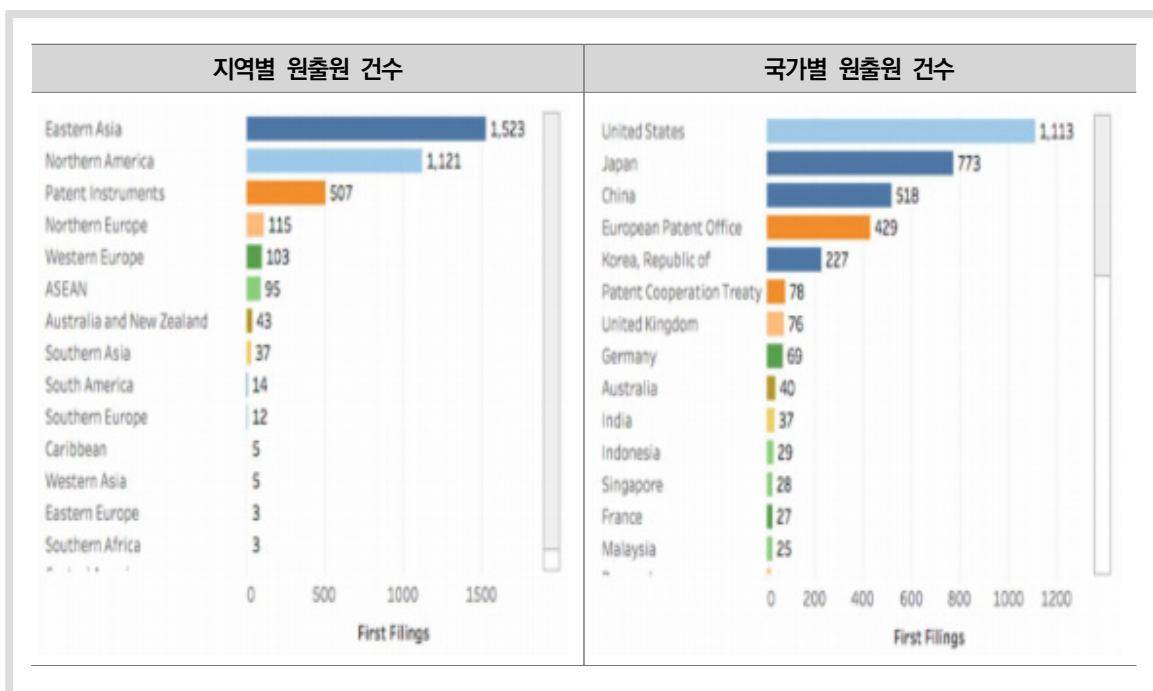
12)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의 대표 특허 검색 및 분석 플랫폼.

II | 해양생물 관련 원출원 및 패밀리 특허 현황

동남아시아 지역 해양생물 관련 특허 원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우리나라, 일본, 중국)가 1,523건으로 가장 높으며,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가 1,121건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PCT 출원을 의미하는 특허기구(patent instruments)를 통한 출원은 507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는 북유럽(115건), 서유럽(103건), ASEAN (95건), 호주 및 뉴질랜드(43건), 남아시아(37건), 남아메리카(14건), 남유럽(12건), 캐리비안(5건), 서아시아(5건), 동유럽(3건) 그리고 남아프리카(3건) 순이다.

동아시아의 원출원을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많은 773건(약 50%), 중국이 518건(약 34%), 그리고 우리나라가 227건(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의 경우 미국이 1,113건(약 99%)으로 거의 주를 이루는 동시에 사실상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원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 뒤로는 유럽 특허청(429건), 영국(76건), 독일(69건), 호주(40건), 인도(37건), 인도네시아(29건), 싱가포르(28건), 프랑스(27건), 그리고 말레이시아(25건) 순이다.

[그림 기] 지역별 및 국가별 출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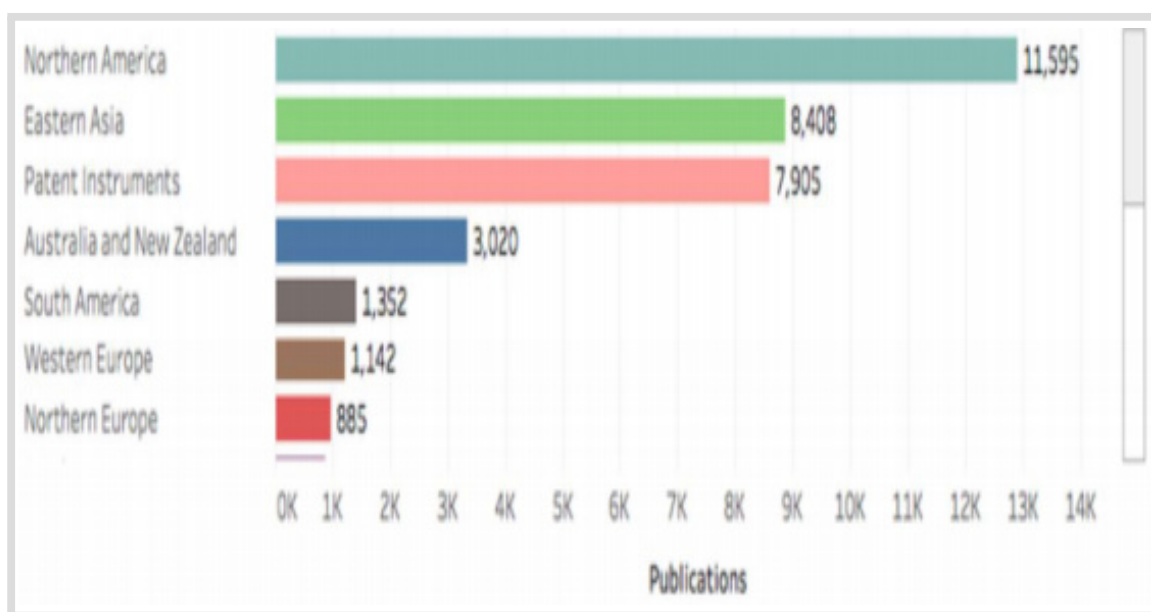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은 자국에서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원출원 특허와 관련된 모든 특허를 패밀리 특허라 하는데, 해양생물 관련 특허 역시 이러한 움직임이 일상적이기에 패밀리 특허 분석을 통해 해양유전자원 관련 특허 동향을 파악하는 것 역시 그 의미가 있다.

특허 권리에 관한 수요는 북아메리카가 11,595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우리나라, 일본, 중국)가 8,408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특허기구가 7,905건을 보이고 있다. 그 뒤로는 호주(3,020건), 남아프리카(1,352건), 서유럽(1,142건) 그리고 북유럽(885건) 순서이다.

[그림 8] 지역별 패밀리 특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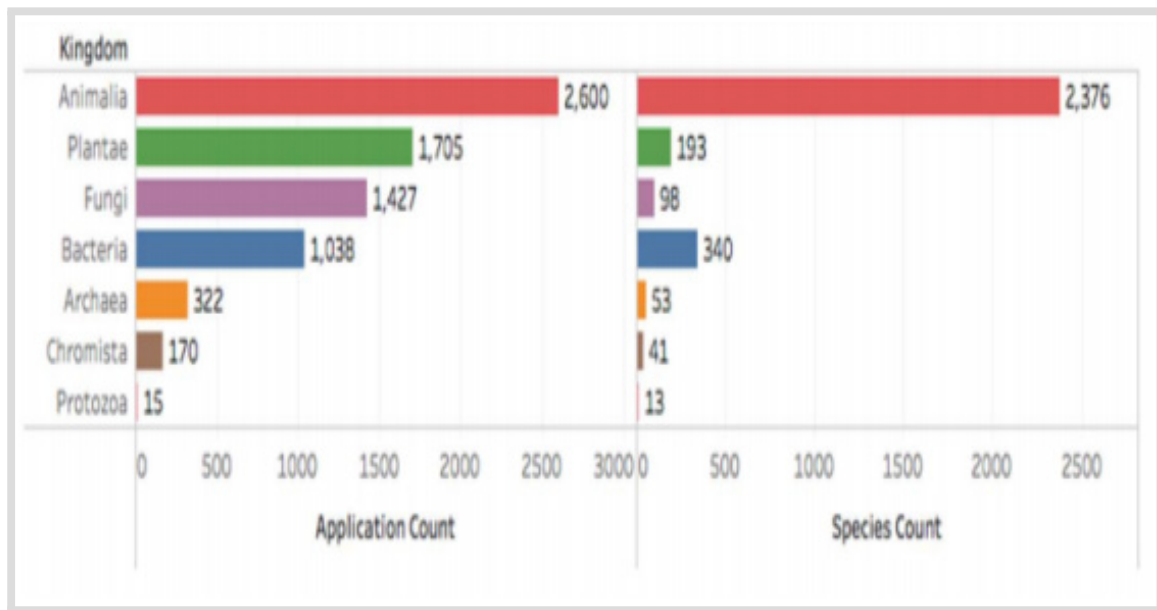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III | 특허에 주로 이용되는 해양유전자원 및 기술분야

특허에 주로 이용되는 해양생물의 경우 해양동물 관련 특허 출원이 2,600건, 활용된 동물종은 2,376개로 가장 많았다. 해양식물 관련 특허 출원은 1,705건으로 활용된 식물종은 193개이며, 곰팡이의 경우 관련 특허 출원은 1,427건으로 활용된 곰팡이종은 98개이다. 그 뒤로는 박테리아(Bacteria, 출원: 1,038건, 활용된 종: 340개), 고세균(Archaea, 출원: 332건, 활용된 종: 53개)¹³⁾, 유색조식물(chromista, 출원: 170건, 활용된 종: 41개)¹⁴⁾ 그리고 원생동물(protozoa, 출원: 15, 활용된 종: 13개)¹⁵⁾이 있다.

[그림 9] 종별 특허건수 및 활용된 생물종 수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해양유전자원이 활용되는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생물공학 및 약학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생물공학 및 유전공학에 활용되는 해양유전자원의 종류는 1,744개이며 이와 관련한 특허 출원 건수는 1,892건이다. 제약 분야에 활용되는 해양유전자원 종류는 1,595건으로 이와 관련한 특허 출원 건수는 1,546건이다. 또한 이외에도 해양유전자원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펩타이드(peptides, C07K)¹⁶⁾분야와 같은 생물·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축산업(animal husbandry, A01K), 가축사료((A23K), 수/폐수/하수 처리(C02F)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까지 분산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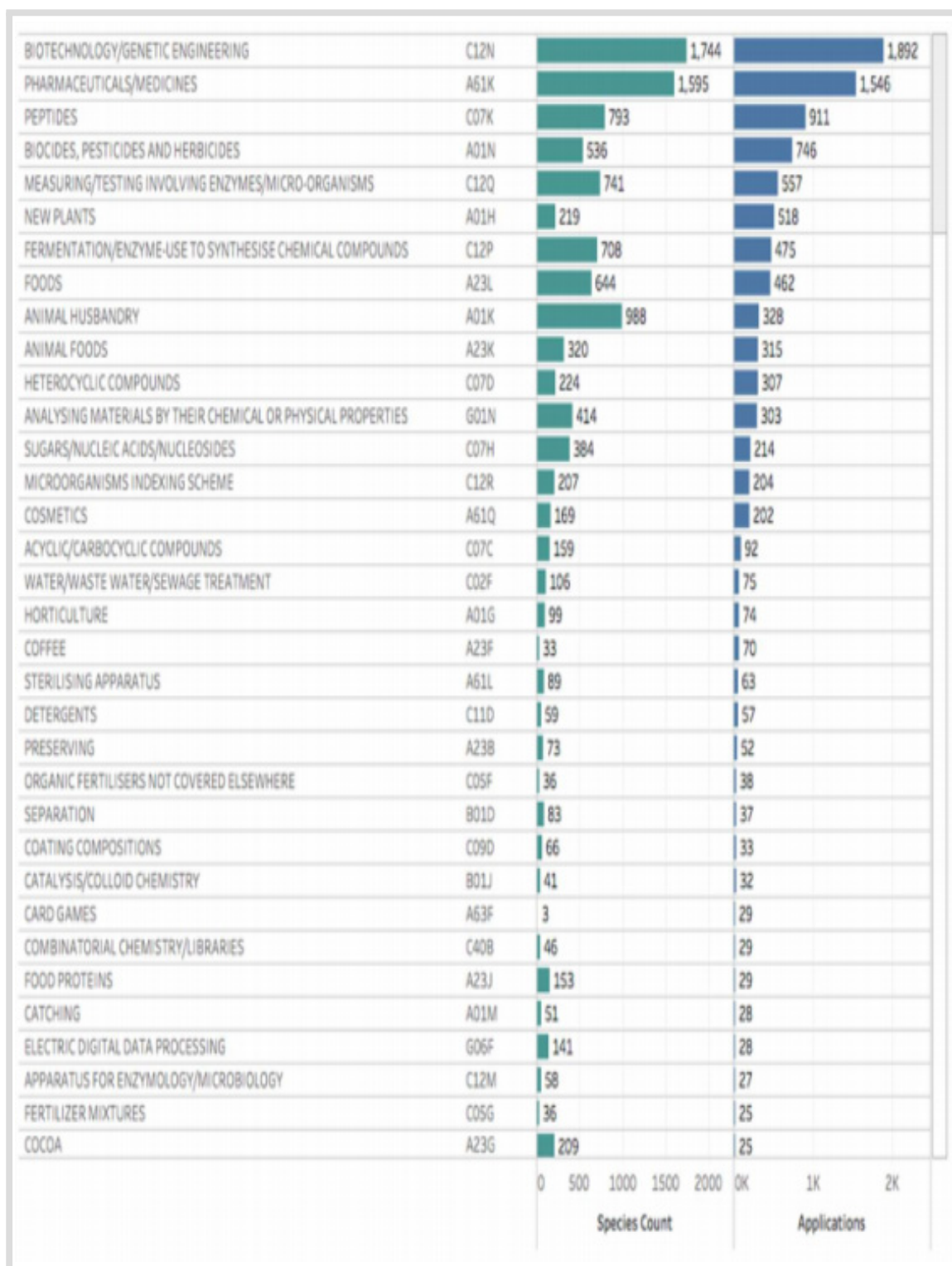
13) 고세균(Archaea)은 고균, 원시세균이라고도 하며 생물학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단세포미생물군임.

14) 유색조식물 또는 크로미스타(영어: Chromista)는 진핵생물 분류군의 하나로, 다계통군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생물 계(界) 또는 원생생물의 하위분류로 취급함. 엽록소 a와 b를 함유한 엽록체를 가진 모든 조류뿐만 아니라,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음.

15) 현미경으로만 관찰되는 미소생물로 단세포성의 진핵생물군을 총칭하며, 체형에 따라 육질충류, 편모충류, 섬모충류 등 약 4만 종에 이룸.

16) 펩타이드(peptide)는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인공적으로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연결된 중합체로 아미노산의 조합에 따라 펩타이드의 기능이 달라짐.

[그림 10] 해양생물 활용 기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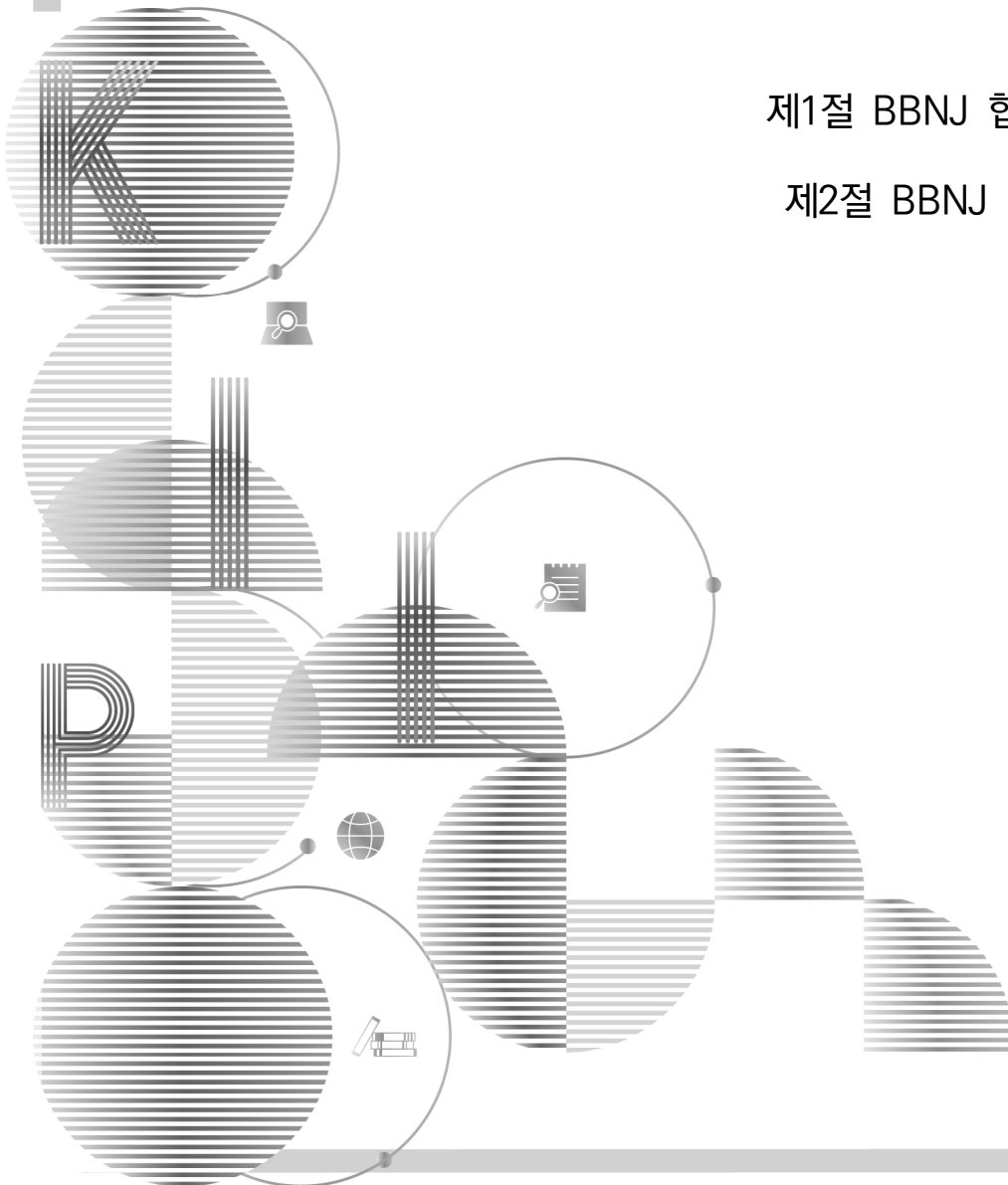
출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

제3장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상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BBNJ)¹⁷⁾

제1절 BBNJ 협정 연구 필요성

제2절 BBNJ 협정문 주요내용



BBNJ 협정 연구 필요성

BBNJ 협정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해양유전자원은 현재의 이용률이 1% 미만인 상태에서도 지구 생물종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자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성체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은 미래의 가치를 무한히 키울 수 있는 미래 자원으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 많은 해양유전자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BBNJ 협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규제와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국가 간 협력과 국제적인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2021년 4월에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생명자원 소재활용 기반 구축 연구개발 사업(2021~2025)'을 발표하며, 관련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둘째, BBNJ 협정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상으로, 지금까지의 ABS(생물다양성 관련 협약)에 대한 논의와는 차별화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해양유전자원의 경우, 이들의 주요 부분이 관할권 이원지역(ABNJ)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BBNJ 협정이 중요성을 갖게 된다. 특히, 해양 환경에서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공해 등의 문제가 더해져 이 지역의 유전자원의 특성이 독특하다.

기존의 ABS 시스템은 국가 관할권 내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해양유전자원의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BBNJ 협정은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규제와 이익 공유 등을 다루고 있다. 이 협정은 2006년에 시작된 비공식 작업반 회의를 거쳐 2023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정부 간 회의에서 문안이 완성되어 동년 6월에 채택되었다. 이는 약 19년간의 긴 논의를 통해 이뤄진 결과로, 국제사회에서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셋째, 지식재산 중심의 BBNJ 협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WIPO IGC를 통한 유전자원 ABS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BBNJ 협정이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

17) 제3장은 2023년 8월 10일 발간된 김영모, 양세희, 'BBNJ 협정문 채택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 검토' IP Focus 2023-15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08.10.)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힘.

자원에 중점을 둔 새로운 토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WIPO의 지식 재산과 관련된 기관들이 해당 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BBNJ 협정은 기존의 관할권 내 유전자원에 중점을 둔 논의와는 다르게,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WIPO의 결정에 따를지, 아니면 BBNJ 협정에서 독립적으로 논의할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2023년 제5차 속개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 중심의 측면이 BBNJ 협정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BNJ 협정문 주요내용

I BBNJ 협정 추진경과

2004년 제5차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비공식회의에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¹⁸⁾ 이 문제는 인류의 다양한 활동이 해당 지역의 해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원 개발, 어업, 환경오염 등이 해당 지역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개방형 실무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이 작업반은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 이용과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이러한 논의와 노력은 BBNJ 협정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5년 작업반회의에서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의 마련’과 ‘유엔 BBNJ 국제문서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간 회의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¹⁹⁾하는 제69차 유엔총회에 제출할 권고문이 채택되었다.

이 권고문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엔 BBNJ 국제문서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정부 간 회의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권고는 국제적인 협력과 합의를 통해 국가 간의 해양생태계 보존 및 이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BBNJ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유엔해양법협약 하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한 BBNJ 준비위원회가 설치²⁰⁾

18) 김대경. “생태계기반 접근법과 BBNJ 국제문서 간 상호관계 연구: 지역기반관리수단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6.2 (2021): 7-40. p.13.

19) “Letter dated 13 February 2015 from the Co-Chairs of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Doc. A/69/780, 2015.

되었다. 이 결정은 기존 체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국제문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BBNJ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 해양유전자원 및 이익 공유, ② 구역기반관리수단, 특히 해양보호구역, ③ 환경영향평가, ④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문서가 개발되어 BBNJ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및 원칙이 마련되었다.

2023년 6월에 개최된 BBNJ 정부 간 회의에서 협정문의 문안이 채택된 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이로써 BBNJ 협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 이 협정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중요한 국제규범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것은 해양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앞으로 이 협정이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국가들 간에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BBNJ 협정이 다른 국제기관 및 규정체제와 어떤 상호작용을 나타낼지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BBNJ 정부 간 회의 추진경과

- 제1차 정부 간 회의(2018.9): 협상 문서 없이 BBNJ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의제별 세부쟁점에 대해 국가별 의견 재확인
- 제2차 정부 간 회의(2019.3): 제1차 회의 결과에 기초해 의장이 작성한 쟁점별 대안을 바탕으로 선호도와 추가 의견을 수렴
- 제3차 정부 간 회의(2019.8): 처음으로 의장이 작성한 조약 형태의 협상 문서를 토대로 논의, 각 주요의제별로 입장 대립 지속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4차 정부 간 회의 두 차례 연기(2020.3, 2021.6)
 - 2020년도 BBNJ 회기간 비공식 서신반 협의 (의제별 2주, 4회) 진행
 - 2021년도 BBNJ 회기간 비공식 웨비나(4회)를 개최하여 주요의제 쟁점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증진
- 제4차 정부 간 회의(2022.3): 일부 조항에 대한 비공식 협상 진행, 일부 의제에 대해 EU 중심의 선진국들이 타협 가능성 시사
- 제5차 정부 간 회의(2022.8): 비공식 작업그룹, 소규모 그룹회의 등을 통한 협상 가속,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지속되어 협상 결렬
- 제5차 정부 간 회의 속개회의(2023.3):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에 따라 타협안이 수용되며 36시간 협상으로 잠정 협정문 채택
- 제5차 정부 간 회의 추가 속개회의 (2023.6): 협정문의 문안 정비 작업을 완료하여 공식 문안 채택

20)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U.N.Doc. A/RES/69/292, 2015.

II | BBNJ 협정문 구성 및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BBNJ 협정은 1994년의 심해저협정과 1995년의 공해 어업협정에 이어 나온 것으로, 총 12개의 부, 76개 조와 2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BBNJ 협정은 바다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UN의 6개 공식 언어로 문서화된 후 정부 간 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양 자원과 환경에 대한 규제와 보호를 다루고 있다. 아래는 각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1부 - 일반 원칙:

인류공동유산 원칙 강조
 형평의 원칙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강조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 필요성 명시

제2부 -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해양유전자원을 중심으로 한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 다룸

제3부 - 구역기반 관리 수단: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 수단 다룸

제4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포함

제5부 - 역량강화와 해양기술 이전: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목적 조항 포함

BBNJ 협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어 해양생물다양성과 자원 이용에 대한 균형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은 이익 공유,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 간의 형평성과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 협정이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명시하여, 이들 국가들이 공정하게 협정의 혜택을 누리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또한, 해양유전자원, 환경영향평가, 구역기반 관리 등의 세부 내용보다는 각 부분에서 강조된 목적 조항이나 원칙들이 협정의 주요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협정이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과 이익 공유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BBNJ 협정문의 구성

조문		내용
-		서문 (PREAMBLE)
1.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제1조	용어의 사용 (Use of terms)
	제2조	일반 목적 (General objective)
	제3조	적용 범위 (Scope of Application)
	제4조	예외 (Exceptions)
	제5조	본 협정과 관련 법적 문서와 체계, 국제기구, 지역기구, 소구역 기구, 분야별 기구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and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제6조	침해 금지 (Without prejudice)
	제7조	일반 원칙과 방법 (General principles and approaches)
	제8조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2.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MARIN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제9조	목적 (Objective)
	제10조	적용 (Application)
	제11조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제12조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관련 활동에 관한 통보 (Notification on activities with respect to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제13조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한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제15조	이익 공유위원회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제16조	모니터링과 투명성 (Monitoring and transparency)

조문	내용
3.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기반 관리수단 MEASURES SUCH AS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제17조 목적 (Objectives)
	제18조 적용 지역 (Areas of Application)
	제19조 제안 (Proposals)
	제20조 제안의 예비 검토와 공개 (Publicity and preliminary review of proposals)
	제21조 제안에 관한 협의와 진단 (Consultations on and assessment of proposals)
	제22조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기반관리수단 구축 (Establishment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제23조 의사결정 (Decision-making)
	제24조 긴급조치 (Emergency measures)
	제25조 이행 (Implementation)
	제26조 모니터링과 검토 (Monitoring and review)
4.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제27조 목적 (Objectives)
	제28조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 (Obligation to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제29조 본 협정과 관련 법적 문서와 체계, 국제기구, 지역기구, 소구역 기구, 분야별 기구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is Agre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es under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제30조 환경영향평가 수행 관련 한계점과 요소 (Thresholds and factors for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제31조 환경영향평가 과정 (Proces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제32조 대중통보와 협의 (Public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제33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제34조 의사결정 (Decision-making)
	제35조 권한행위에 따른 영향 모니터링 (Monitoring of impacts of authorized activities)
	제36조 권한행위에 따른 영향 보고서 (Reporting on impacts of authorized activities)
	제37조 권한행위와 영향에 대한 검토 (Review of authorized activities and their impacts)
5. 역량강화와 해양기술 이전	제38조 과학기술기구에 의해 개발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표준 그리고/또는 가이드라인 (Standards and/or guidelines to be develop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제39조 전략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제40조 목적 (Objectives)

조문		내용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제41조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협력 (Cooperation in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제42조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의 방식 (Modalities for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제43조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의 기타 방식 (Additional modalities for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제44조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유형 (Types of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제45조	모니터링과 검토 (Monitoring and review)
	제46조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위원회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committee)
6. 제도 장치 INSTITUTIONAL ARRANGEMENTS	제47조	회원국 총회 (Conference of parties)
	제48조	추적성 (Transparency)
	제49조	과학기술 기구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제50조	사무국 (Secretariat)
	제51조	정보공유체계 (Clearing-house mechanism)
7. 금융자원과 구조 FINANCIAL RESOURCES AND MECHANISM	제52조	기금 (Funding)
8. 적용과 이행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제53조	적용 (Implementation)
	제54조	적용의 모니터링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제55조	이행준수위원회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Committee)
9. 분쟁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제56조	분쟁의 방지 (Prevention of disputes)
	제57조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의무 (Obligation to settle disputes by peaceful means)
	제58조	회원국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by any peaceful means chosen by the Parties)
	제59조	기술적 성격의 분쟁 (Disputes of a technical nature)
	제60조	분쟁해결절차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61조	잠정협정 (Provisional arrangements)
10. 협약의 비회원국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제62조	본 협약의 비회원국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11.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제63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12.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제64조	투표의 권리 (Right to vote)
	제65조	서명 (Signature)

조문	내용
제66조	비준, 승인, 수락, 공식 확인 (Ratification, approval, acceptance and accession)
제67조	본 협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역경제통합기구와 그 회원국의 권한 분할 (Division of the competen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 States in respect of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제68조	발효 (Entry into force)
제69조	잠정 적용 (Provisional application)
제70조	유보 및 예외 (Reservations and exceptions)
제71조	선언 (Declarations and statements)
제72조	수정 (Amendment)
제73조	폐기 (Denunciation)
제74조	에넥스 (Annexes)
제75조	수탁자 (Depositary)
제76조	정본 (Authentic texts)

2 협정문 주요내용

해당 협정문은 다음 다섯 가지의 주요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합의 도출: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공감은 중요한 발전이지만, 수단 및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의 다양한 이해 차이와 이익 추구에 기인한다. 합의 결과로 선진국이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틀을 유지하면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규범과 협약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개도국은 해양유전자원의 상업적 활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자원의 공정한 이익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은 국제적인 협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협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의된 결과가 이행 가능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둘째,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수익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동하여 공유하는 체제를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선진국이 해양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나누고자 한다. 더불어, 선진국 중심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해양기술 발전과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생물다양성 확보와 해양보호구역 설치:

해양보호구역(MPA) 설치 및 기존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해 등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BBNJ 회원국 총회를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해양보호 및 보존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정: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될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활동 수행 여부는 회원국이 결정하되, 과학기술기구가 평가의 일정 단계에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다섯째,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방법과 유형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자 한다. 선진국은 개도국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의무 수준을 규정하며,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채득한 해양유전자원과 이익의 공유, 상업적 활용으로부터의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다자적 체제를 수립하고자 한다.

III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 용어의 정리

제1항에 따르면, “구역기반관리수단”은 본 협정의 목적 중 하나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리적 구역을 정의하는 수단으로 규정된다. 이 개념은 해양보호구역을 포괄하며, “구역기반관리수단”은 해양보호구역의 상위 개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구역기반관리수단”은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언급되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현지 내 채집(Collection *in situ*)”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직접 채집하거나 샘플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지 외 접근”, “관련 자료 및 정보”, “파생물”,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부 이행 시 이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해석 문제가 예상된다.

협정의 구체적인 용어 및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용어들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분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각 국가가 용어를 자체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향후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조 제8항의 “해양유전자원” 및 제1조 제12항의 “해양유전자원의 이용” 정의가 기존 CBD(생물다양성 협약)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다. 제1조 제8항에서는 “해양유전자원”을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CBD에서 정의한 유전자원과 유전물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가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정의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제1조 제9항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은 특정한 장기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고 관리되는 특정 지리적 구역을 의미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보전 목적과 조화를 이루며 일정 범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는 구역기반 관리수단과는 별도로, “해양보호구역”이 특정한 보전 목적을 갖고 설계되며 일정 범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리적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는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보호 목적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역은 특정한 장기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지속가능한 이용도 허용될 수 있다.

제1조 제10항에서 “해양기술”을 해양과학, 관련 해양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자료, 매뉴얼, 지침, 시설,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5부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부문에서는 ‘바이오공학’ 용어를 삭제했지만, 해양기술의 정의에서는 여전히 ‘바이오공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의 폭넓은 범위는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개발과 혁신을 아우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바이오공학’이 여전히 해양기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과학 및 유전공학과 관련된 기술도 해양자원 및 환경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조 제12항의 “해양유전자원의 이용” 정의가 CBD의 “유전자원의 이용”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정의는 해양유전자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물이 바이오공학기술을 통해 해양유전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경우에도 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협정이 CBD의 관련 내용을 채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파생물의 해양유전자원의 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해양유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바이오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파생물을 통해 얻어진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제4조 예외

제4조에 따르면 본 협정은 군함, 군사 항공기, 또는 부속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회원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정부의 비상업적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부에서는 비상업용 정부 소유 및 운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에도 본 협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기의 수단을 통해 본 협정에서 규정한 의무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전히 군함, 군사 항공기 또는 그 부속함을 통한 해양유전자원 접근은 이 부에서 정한 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적인 목적 또는 비상업적 정부 서비스에 사용되는 수단이 협정에서 명시된 규제나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제5조 본 협정과 협약 그리고 관련 법문서 등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르면 본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며, 협약 상의 국가 권리와 관할권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체계, 그리고 관련 세계적, 지역적, 소지역적, 영역별 기구와의 일관성과 조화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기존 관련 협정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기초하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일관성은 해양 자원과 환경에 대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를 존중하고, 협약이 해당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조화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본 협정 또는 기타 관련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법적 지위가 이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간의 공평하고 상호 존중적인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제6조 침해금지

제6조에 따르면 본 협정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과 관련된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본 협정의 적용 범위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관할권 외측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특히,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 또는 섬의 법적 지위)에 본 협정의 내용이 적용 및 준용될 우

려가 있어서 반영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들 간의 해양 자원 및 활동에 대한 관할권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법 및 국제 법규에 따라 각 국가의 주장을 존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양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서 협정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제7조 일반원칙과 접근법

제7조 (b)항에 따르면 “인류의 공동유산”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의한 내용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의하는 “인류의 공동유산”은 주로 심해저와 그 자원(기체, 액체, 고체 광물자원)에 관련된 것으로 나와 있어 해양유전자원이 이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협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며, 심해저 자원에 중점을 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해양유전자원은 주로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초기 목적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협정의 적용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제7조 (d)항은 “형평의 원칙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형평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지만, 해당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채, 법적 교정적 측면이나 이익 분배 측면에서 사용되는 원칙을 언급하고 있어 추후 사례별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정의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협정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형평과 이익 공유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사례별 이행 및 협력을 통해 형평의 원칙이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가 어떻게 해석되고 실질화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7조 (e)항에서는 “사전주의 원칙 또는 사전주의 접근”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 원칙 또는 접근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다가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이나 여전히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원칙 내용에 대한 해석과 기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사전주의 원칙 또는 사전주의 접근”의 구체적인 내용 및 언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현장에서의 해석과 이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7조 (m)항과 (n)항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내륙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을 다루고 있다. 즉,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전반적으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협정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제공하여, 이 국가들이 협정의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개발도상국, 최빈국, 내륙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 협정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제적인 공정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제2부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1 제9조 목적

제9조에서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문안은 다양한 국가 그룹을 고려하고 있어, 최빈국, 내륙개발도상국, 지리적 불리국, 개도국, 아프리카 연안국, 군도국가, 중간수입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를 포함하여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회원국이 협력적이고 상호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즉, 국가들 간의 협력과 이해관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제9조의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이익 공유와 더불어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해양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전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양유전자원의 규제적 측면도 강조되었으나 최종 채택 문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이는 주로 보전과 이용에 중점을 두는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정이 해양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국들 간의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규제 측면의 삭제는 협정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회원국들이 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2 제10조 적용

제10조 제1항은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이후에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된 해양유전자원과 해당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만 적용되며, 소급 효과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수집되거나 생성된 해양유전자원 및 해당 염기서열 정보에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원국이 이 협정 제70조에 따라 문서로 예외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채집 또는 생성된 해양유전자원과 해당 염기서열 정보의 이용에는 협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수집 또는 생성된 해양유전자원과 해당 염기서열 정보의 이용에 대한 예외 선언이 없는 한,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소급 효과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규율되는 어류 또는 기타 해양생물자원을 제외하고, 관련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 그리고 어류와 기타 해양생물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어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국제법으로 규율되고 있어서, 이 협정이 별도로 규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10조 제3항에서는 이 협정의 의무가 비상업용 서비스에 사용되는 정부선박과 항공기의 군사활동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군사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본 협정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는 활동에서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제11조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

협정의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 채집 활동은 연안국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고려하고, 이원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국가도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 주장이나 행사는 불가능하며, 연안국 및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는데 특별한 실행 방법을 통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채집 활동에 대한 통보를 통해 이뤄지는 협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심해저를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에서 파생된 규정으로,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면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제12조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 및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 염기 서열 정보(DSI) 관련 활동에 관한 통보

제12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정보를 일정한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할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통보는 채집 전, 채집 이후, 그리고 이용 시, 세 가지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통보는 채집 활동이 시작되는 6개월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통보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보 통보는 투명성과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교류를 지원하여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된다.

사전통보 내용

- 채집의 성격과 목적, 적절한 경우 채집 상위 모든 프로그램
- 연구 대상 또는 채집될 해양유전자원(아는 경우), 그리고 채집 의도
- 채집이 수행되는 지리학적 해역
- 채집에 사용되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요약(선박 명, 톤수, 유형, 등급, 과학 장비, 연구 방법)
-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다른 기여에 관한 정보
- 연구 선박의 첫 도착과 마지막 출발 예상 시기 또는 적절한 경우에 장비 설치와 제거에 관한 예상 시기
- 보증 기관의 명칭과 프로젝트 책임자의 성명
-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여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과학자, 특히 개발도상국 과학자를 위한 기회
- 기술적 원조를 필요로 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거나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고려되는 범위
- 현재의 국제 관행을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자료 거버넌스에 따라 준비된 자료관리 계획

통보 이후,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체계는 BBNJ 표준배치식별자(standardized batch identifier)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회원국은 제공된 정보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또는 최소한 채집 전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표준배치식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협정이 발효된 이후 이행 단계에서 회원국 총회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2조 제5항에 따라 회원국은 실현 가능한 경우 최대한 빨리, 그러나 적어도 채집 이후 1년 이내에 정보공유체계에 BBNJ 표준배치식별자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사전통보 내용

-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기탁되어 있거나 기탁될 저장소 또는 DB
- 현지 내에서 채집된 모든 해양유전자원이 기탁 또는 보관되어 있거나 기탁 또는 보관될 위치
- 채집 위도, 경도와 수심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활동에서 얻은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해양유전자원이 채집된 지리학적 해역에 관한 상세 보고
- 자료관리계획의 필요한 업데이트

제12조 제6항은 회원국이 국가 관할권 내의 저장소와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샘플과 그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양유전자원 샘플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자원이 어떤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파생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이익 공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자원의 출처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는 데에 있어 공평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회원국은 해당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출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제7항은 회원국이 2년마다 자국의 저장소와 데이터베이스가 BBNJ 표준배치식별자와 연계된 해양유전자원 및 그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총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접근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2년 주기로 해당 정보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회원국은 자국의 해양유전자원 데이터에 대한 접근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BBNJ 표준배치식별자와 연계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는 협정의 이행과 이익 공유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12조 제8항에 따라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가능한 경우 그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이 자국 관할권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원국은 BBNJ 표준배치식별자를 포함한 정보를 정보공유체계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정보공유 체계에 통보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유체계에 통보되어야 하는 내용

- 현재 국제관행에 따라 샘플과 샘플 컬렉션에 대한 접근
- 출판, 특허, 이용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된 상품과 같은 이용의 결과를 찾을 수 있는 장소
- 이용의 대상이 되었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정보공유체계 사후채집통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장소
- 이용의 대상인 원형 샘플이 보관된 장소
- 이용된 해양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한 방법과 자료관리계획
- 상품화될 시, 가능한 경우, 관련 상품과 모든 후속 개발의 판매에 관한 정보

5 제1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제14조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유는 금전적인 형태의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형태의 이익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비금전적 형태의 이익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는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이익 공유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과 이익 균형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비금전적 형태의 이익 공유 예시

- 현재 국제관행에 따라 샘플과 샘플 컬렉션에 대한 접근
- 현재 국제관행에 따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접근
- 현재 국제관행과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자료 관리에 따라,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할 수 있으며(accessible), 상호운영가능하며(interoperable), 재사용가능한(reusable) 과학적 자료에 대한 공개적 접근
- 제12조에 따라 제공된 통보에 포함된 정보
- 이 협정 제5부에 따라 규정된 방법과 일치하는 해양기술이전
- 연구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는 역량강화
- 특히, 개발도상국 과학연구소와 그 과학자와 증진된 과학기술협력
- 회원국 총회가 결정하는 기타 형태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 관할권 내에서 사람이나 법인에 의해 이용되는 해양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이용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현재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장소와 데이터베이스(DB)에 기부되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회원국에 부여된다.

이러한 규정은 이용된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저장소 및 데이터베이스에 기부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 및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고

자 하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회원국은 이러한 규정에 합리적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에는 최우선적인 대우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정한 협력과 균형 있는 이익 분배를 고려하고 있다.

부여가능한 합리적 조건

- 샘플,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는 관련 DB, 생물저장소 또는 유전자 은행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
- 해양유전자원,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에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
- 이 협정의 목적에 합치하는 기타 합리적 조건

제14조 제5항은 금전적인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 항에 따르면, 금전적인 이익 공유에 대한 재정 체계가 마련된 후에는 회원국은 체계에 따라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제14조 제6항에서는 재정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는 특별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금전적인 이익 공유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정이 발효되고 금전적인 이익 공유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회원국들은 특별기금에 자발적인 기여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금전적인 이익 공유 체계가 정립되기 전에도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협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14조 제6항은 금전적인 이익 공유에 대한 특별기금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은 매년 특별기금에 기여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 기여금의 비율은 해당 회원국의 분담금에 대한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된 예산의 50%이다. 이러한 기여금 납부는 금전적 이익 공유 체계가 설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재정 체계가 마련되고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선진국이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6 제15조 접근 및 이익 공유 위원회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내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관리하기 위해 “접근 및 이익 공유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해당 활동들을 감독하고,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며, 투명성을 제공하고 관련 지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회원국은 자국의 이익 공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는 자체적으로 추적 가능한 기록을 관리하고,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인 투명성을 제공한다. 이는 협정의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익 공유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1 제18조 적용지역

제18조에서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은 국가 관할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며,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그 부인을 위해 활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된 구역기반관리수단은 국가 관할권 이외의 해양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최종 논의에서 분쟁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영유권 등 분쟁이 있는 도서가 있는 지역에는 설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수정되어 현재의 내용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2 제19조 제안

제19조에 따르면 구역기반관리수단은 회원국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동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서는 “최상의 이용 가능한 과학과 과학적 정보, 그리고 이용가능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사전주의 접근법과 생태계 접근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안서는 특정 지역의 구역기반관리를 위한 계획과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을 위한 제안서 주요요소

- 제안서 대상 지역의 지리적 또는 공간적 기술
- 부속서에 규정된 기준에 관한 정보
- 토착지역공동체의 이용을 포함하는 그 해역의 인간 활동
- 해양환경과 생물다양성 상태에 관한 기술
- 보존과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이용 목적에 관한 기술
- 제안 조치와 모니터링·연구·검토 활동과 같은 관리계획 초안, 기간, 수행된 협의에 관한 정보
- 관련 법문서 등에서 이행되고 있는 구역기반관리수단에 관한 정보
- 관련 과학적 조연과 이용가능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3 제20조 제안서 예비 검토와 공개

제20조에 따르면 구역기반관리수단 제안서는 사무국에 제출되고, 이후에 공개된다. 그리고 협의와 평가 과정을 거쳐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안서 제출: 회원국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 ② 제안서 공개: 사무국은 회원국의 제안서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기구 예비검토: 과학기술기구는 제안서에 대한 예비검토를 수행한다. 이 예비검토 결과는 사무국에 의해 공개되고, 제안자에게 송부된다.
- ④ 제안서 수정 및 재제출: 제안자는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수정하고, 사무국에 다시 제출한다.
- ⑤ 수정 제안서 공개: 사무국은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정된 제안서를 공개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되며,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4 제21조 제안서 협의와 평가

제21조에 따르면, 최종 제안서가 공개된 후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 협의는 국가,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 토착지역공동체, 과학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된다. 이로써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구는 제안서에 대한 권고와 수정된 제안서의 평가를 회원국 총회에 권고한다. 이 권고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회원국 총회가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 되게 된다. 그러므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에 대한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5 제22조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제22조에 따르면,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에 대한 결정 권한은 회원국 총회에 있다. 이 결정

과정에서는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의 권한을 존중하고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 총회는 최종 제안서와 관리계획 초안을 기반으로 의견 및 과학기술기구의 과학적 조언과 권고를 고려하여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에서 이미 구역기반관리수단이 채택된 경우, 회원국 총회는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이를 양립 가능한 조치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이 다른 기구의 권한에 속한다면, 회원국 총회는 해당 기구와 회원국에게 관련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에 대한 결정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여 내리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회원국 총회의 결정이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의 권한을 존중하고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기존의 국제법적 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는 국제적인 협조와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며, 다양한 법적 체제와 조약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고 관련 조치를 결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를 나타낸다.

제22조 제4항은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기존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된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결정을 회원국 총회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원국 총회는 새로운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체제와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체제가 존중받고 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6 제23조 의사결정

제23조 제1항에서는 의사결정이 원칙적으로 합의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참석자 2/3의 과반수로 확인한 후, 참석자 3/4의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협정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합의를 우선시하면서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율적이고 타협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조치로 보인다.

제23조 제4항은 의사결정이 총회가 정한 날로부터 120일 후에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다음 중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① 결정이 이 협정 또는 협약에 따른 반대하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지 않음
- ② 결정이 반대하는 회원국을 부당하게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
- ③ 그 회원국이 모든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 당시 결정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타당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국 총회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지니는 대체 조치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국 총회 결정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제23조 제7항과 제8항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회원국이 반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회원국 총회에서 이행, 모니터링,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통보가 없는 경우, 선언의 효력이 자동으로 철회된다. 이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유지하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지속되어야 한다.

7 제24조 긴급조치

제24조에 따르면, 회원국 총회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비상사태에 관한 조치 채택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이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의 적용 또는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에 의하여 적시에 관리되지 못할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하며,
-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에 의하여 또는 과학기술기구의 권고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으며, 회기간 채택될 수 있고,
- 이 조치는 일시적이어서 다음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을 재고하여야 하고, 발효 이후 2년에는 종료되며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에 관한 회원국 총회 결정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제25조~제26조 이행과 모니터링 그리고 검토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이 협정 총회에서의 결정과 권고를 지원하는 데 회원국 지위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설정된 구역기반 관리 수단과 관련 조치의 이행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것은 회원국이 협정에서 결정된 규정 및 구역기반 관리 수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행 상황을 평가

하고 이를 다른 회원국과 국제사회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6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본 협정에 의해 설정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는 회원국 및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로부터 받은 보고와 정보에 기초하여 과학기술기구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과학기술기구에 의한 관련 자료 검토 시 구역기반관리 수단의 효과를 평가하고 회원국 총회에 자문과 권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구역기반관리 수단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및 검토의 프로세스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회원국 총회는 이미 채택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의 수정, 연장, 또는 철회에 관한 결정 또는 권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나 권고는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의 권한을 존중하고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미 채택된 관련 법문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양립 가능한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가 관련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이 협정과 관련 기구의 회원국에게 권고를 해야 한다. 이는 구역기반관리 수단과 관련 조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VI | 제4부 환경영향평가

1 제28조 환경영향평가 수행의무

제28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회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의 계획된 활동이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심각한 해로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활동이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① 국내과정 중 적절한 시기에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관련 정보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② 계획된 활동은 국내과정의 요건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모든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 가능해야 한다. ④ 보고서가 공유되는 경우, 과학기술기구는 해당 국가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음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2 제29조 본 협정과 다른 관련 법문서 등과의 관계

제29조 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회원국은 자국이 회원으로 있는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이용과 이에 따라 정하는 표준과 지침의 채택 및 이행을 증진할 의무를 가진다.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부에 따른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과학기술기구는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와 협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BBNJ 협정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문서, 체제, 기구와 협업하여 해당 지침과 표준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협력과 조정을 통해 표준과 지침이 계속해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협정에서는 본 협정상의 환경영향평가 의무와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의무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이 부에 따른 스크리닝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이 특정 활동에 대해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예외적인 조건은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완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예외적 조건

-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의 요건에 따라 잠재적 영향이 평가되고,
- 이미 취해진 평가가 이 부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 평가 결과가 고려되거나,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의 규칙 또는 표준이 이 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발동요건 이하의 잠재적 영향을 방지, 경감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 하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음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회원국은 해당 평가 결과 및 기타 관련 정보를 BBNJ 협정의 정보공유체계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회원국들과 공유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9조 제6항에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국가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회원국은 해당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공유체계에 보고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검토를 통해 국제적인 투명성을 유지하고 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제30조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요건과 요인

제30조에 따르면, 만약 계획된 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초과하거나 그 영향을 알 수 없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은 BBNJ 협정 제31조에 따라 스크리닝을 수행해야 한다. 스크리닝 제도는 원래는 모든 활동에 대해 발동 요건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BBNJ 협정은 스크리닝을 사소한 또는 일시적인 영향을 초과하거나 알 수 없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의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의 영향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이거나 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크리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스크리닝은 활동이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질적인 오염이나 심각한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평가하기 위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1항(a)에 명시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스크리닝 포함 내용

- 계획된 활동 목적, 위치, 기간, 강도를 포함하여 활동에 관한 기술
- 누적영향과 적절한 경우 대체수단에 관한 고려를 포함하여 잠재적 영향에 관한 기초 분석

스크리닝 결과, 만약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BBNJ 협정은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b)).

4 제31조~제37조 협정 본문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규정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을 위한 제안서 주요요소

- 스크리닝: 환경영향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모든 회원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그 결정을 내린 회원국과 과학기술기구에 제출 가능
 - 과학기술기구는 잠재적 영향의 고려·평가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스코핑: 계획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확정
 - 주요 환경영향, 잠재적 누적 영향, 국가 관할권 이내 지역에서의 영향, 대체수단을 포함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및 보건 영향과 같은 모든 관련 영향을 포함해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나 어업활동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향 등 모든 관련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영향평가: 최상의 이용가능한 과학과 과학적 정보, 이용가능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여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누적 영향과 국가 관할권 이내지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함
-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방지, 경감, 관리: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식별되고 분석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방지, 경감,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는 대체수단을 포함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에 이러한 조치들을 환경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대중통보와 협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계획된 활동과 참여기회를 정보공유체계와 사무국을 통하여 대중통보 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 통보와 협의는 활동 허가 결정 이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특히 스코핑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 협의과정에서 특히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인접한 연안국과 활동 인근의 모든 다른 국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협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관련 전통지식을 갖는 토착지역공동체, 관련 세계적, 지역적, 소지역적, 영역적 기구, 시민단체, 과학단체와 대중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규정됨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계획된 활동에 관한 기술, 스코핑 결과에 관한 기술, 기초환경평가, 잠재적 영향에 관한 기술, 잠재적 방지, 경감, 관리조치에 관한 기술, 불확실성과 지식의 흠결, 대중협의과정에 관한 정보, 합리적 대체수단에 관한 기술,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는 후속적 활동에 관한 기술, 비술적적 요약을 포함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은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며, 과학기술기구는 이를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음
 - 회원국은 과학기술기구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 견해는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발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발간된 보고서에 대한 통보를 수행하고, 과학기술기구는 보고서와 스크리닝 과정에서 사용된 정보를 고려 및 검토할 수 있음
- 의사결정: 회원국은 이 부에 따라 수행된 환경영향평가와 보고서를 고려하여 계획된 활동의 진행여부 결정할 책임을 가짐
 - 결정문서는 승인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결정 문서를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회원국이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원국 총회가 계획된 활동의 진행 여부를 결정에 관여할 수 있음
- 권한행위 영향의 모니터링과 보고: 회원국은 허가된 활동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님
 - 모니터링 보고서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되며, 과학기술기구는 이를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음
- 권한행위와 영향의 검토: 회원국은 허가된 활동의 모니터링된 영향을 검토할 의무를 가짐
 - 과학기술기구는 영향평가 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활동 허가 시 조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경우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 모든 회원국은 영향평가 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활동 허가 시 조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활동을 허가한 회원국과 과학기술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

1 제41조 협력

제41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 법문서 등을 통해 역량강화,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통한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적절한 경우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모든 단계와 형태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어, 회원국 간에 광범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의 제목은 해양기술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는 해양과학과 해양기술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몇몇 국가가 해양과학이 제안된 문구에 포함되지 않아 해양 기술에만 국한돼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해양 기술 부분은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2 제42조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방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의 역량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을 보장하고, 해양기술이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의무는 차등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항). 다시 말해, 회원국은 역량개발과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국의 역량 범위 내에서 국내 정책과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은 소도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제43조 해양기술이전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

제43조에 따르면 해양기술의 이전은 상호합의조건과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선진국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상호합의조건에 따른' 문구가 관철된 것으로, 이에 따라 해양기술이전은 기본적으로 제공국과 수혜국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존의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해양기술의 이전은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국과 수혜국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양허와 특혜 조건을 포함하여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와 기술시장의 적절한 가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4 제44조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의 유형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의 유형은 예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언제든지 추가적인 유형이 개발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담고 있는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부속서II는 더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유형 예시

- 관련 자료, 정보, 지식과 연구 결과의 공유와 이용
- 토착지역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하는 정보 확산과 인식제고
- 이용과 유지를 위한 장비와 인적 역량을 포함하는 관련 인프라의 개발과 강화
- 제도적 역량과 국가 규범체계 또는 체계의 개발과 강화
- 교환, 연구협력, 기술지원, 교육과 훈련, 해양기술이전을 통한 인적 및 재정적 관리자원역량과 기술적 전문지식의 개발과 강화
- 매뉴얼, 지침과 표준의 개발과 공유
- 기술적, 과학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 본 협정 범위 내 활동의 효과적 모니터링, 통제, 감시를 위한 역량과 기술 도구 개발과 강화

5 제46조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위원회

제46조에서는 이 부의 이행을 위하여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분야에 적절한 자질을 가진 위원으로, 회원국에 의하여 추천되고 회원국 총회에서 젠더(gender),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특히 최빈국, 소도서개발도상국, 내륙 개발도상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수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은 국가 주도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은 국가여야 한다는 주장이 선진국으로부터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위원회의 역할이 모니터링과 그 검토 결과 권고로 한정되며, 회원국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원안대로 수용되었다.

1 제47조 회원국 총회

제47조 제2항에서는 회원국 총회가 설립되며, 첫 번째 회원국 총회는 이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UN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고, 그 이후 통상적인 회원국 총회는 총회가 결정하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개최되며, 임시 회원국 총회는 절차 규칙에 따라 다른 시기에 개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국 총회는 사무국 또는 UN 본부 소재지에서 열리므로, 이 협정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협정 발효 이후 소집되는 제1차 회원국 총회에서는 회원국 총회와 보조기관을 위한 절차 규칙, 총회와 사무국 및 모든 보조기관 재정 지원을 위한 재정 규칙, 그리고 회원국 총회가 설립할 수 있는 추가 보조기관에 대한 절차 및 재정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제4항). 이러한 절차 규칙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컨센서스(합의)로 결정하되, 모든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하는 BBNJ 정부 간 회의 절차 규칙이 적용된다.

제47조 제5항에서는 회원국 총회의 결정이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로 이루어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 총회는 컨센서스로 결정과 권고를 채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만 다수결로 결정된다. 또한 컨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이 고갈된 경우에는 본질적 문제에 관한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3분의 2 이상 다수로, 절차에 관한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회원국 총회의 역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결정과 권고를 채택하고, 회원국 간 정보 교환을 검토하고 증진하며, 관련 법문서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립하고, 예산을 채택하며, 이 협정에 따른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결정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로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력이 고갈된 경우에는 참석하여 투표하는 4분의 3 이상 다수로 결정된다.

제47조 제7항에서는 회원국 총회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총회 권한 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적합성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관련 법문서 등의 권한 범위 내의 문제나 대륙붕 또는 도서에 관한 주권이나 기타 권리와 그로 인한 주장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분쟁이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하며 국제적인 법적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제47조 제8항에서는 회원국 총회가 이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협정의 조항을 평가하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정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지속

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9조 과학기술기구

본 협정에 따라 과학기술기구가 설립된다. 이 기구의 구성원은 관련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토착지역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 젠더(gender)와 형평적인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질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은 회원국에 의해 추천되고 회원국 총회에서 선출된다.

과학기술기구의 주요 역할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총회에 과학적,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이 협정에서 부여한 기능과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구는 주로 각 부의 관련 이행에 필요한 표준과 지침 개발, 각 부의 제안서, 평가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의 검토와 평가, 그에 따른 회원국 총회 또는 회원국에 대한 권고 등을 수행한다. 운영에 필요한 참조 요건과 방법은 첫 번째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 기구는 필요에 따라 관련 법문서 등과 기타 과학자와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3 제50조 사무국

본 협정에 따라 사무국이 설립된다. 사무국 소재지를 포함한 사무국 기능에 관한 약정은 1차 회원국 총회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사무국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UN해양법국에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회원국 총회와 보조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회원국 총회와 보조기관 회의를 준비 및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 총회 결정을 포함한 이행 관련 정보를 회람, 공개, 전송하고, 다른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한다. 사무국은 또한 이 협정의 기능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 협정 이행을 원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제51조 정보공유체계

본 협정에서의 정보공유체계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축되며, 각 부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접근, 제공, 배포가 가능한 중앙집권적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이 정보공유체계는 BBNJ 협정 이행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중앙집권적으로 저장하는 저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양유전자원, 구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와 해

양기술이전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접근, 제공, 배포를 가능케 하는 중앙집권적 플랫폼으로 설립된다.

정보공유체계는 역량강화 필요와 이용가능한 지원 및 해양기술이전을 위한 제공자와 매칭, 관련 기구의 정보공유체계 및 기타 DB, 저장소 및 유전자 은행과의 링크 제공, 세계적, 지역적, 영역별 정보공유제도 설립, 투명성 강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되며, 운영방식은 사무국에서 관리된다.

또한, 정보공유체계는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기구와 협력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 같은 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기밀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조항도 회원국 국내법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 하에서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X 제7부 자원 및 체계~제11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1 제52조 재정

각 회원국은 자국의 역량 범위 내에서 국내 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협정에서 설립되는 제도는 회원국의 분담금을 통해 재정 지원받아 운영되며, 일반 재정은 회원국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본 협정 제3조에서는 재정 체계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활동, 역량강화, 그리고 해양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4항에 따라 자원 체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①개발도상국 대표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신탁기금, ② 제14조 제6항에 따른 선진국의 기여금, 제14조 제7항에 따른 금전적 이익 공유 방식에 따른 지불금, 회원국과 사적 주체의 기타 기여금으로 구성되는 특별기금, ③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신탁자금.

특히, 지구환경기금의 경우에는 회원국 총회 첫 번째 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관한 회원국 총회와 지구환경기금 간의 별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6조는 자원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기금과 지구환경기금 신탁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이 협정의 역량강화 프로젝트(해양기술이전 관련 훈련 포함) 재정지원, ② 이 협정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 원조, ③ 전통지식 보유자로서 토착지역공동체에 의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프로그램 지원, ④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차원의 공공협의 지원, ⑤ 회원국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기타 활동 수행 재정지원.

재원의 관리는 회원국 총회에 의해 설립된 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재정위원회의 구성은 젠더와 형평적인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질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회원국 추천을 통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원국 총회가 재정위원회의 운영 조건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있다. 재정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적인 보고 및 권고: 재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재정체계 하의 기금 식별과 동원에 관한 보고를 작성하고 회원국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필요평가 및 기금 이용가능성 평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회원국의 필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의 이용 가능성과 지출의 적절한 시기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재원 마련과 할당에 관한 의사결정 및 관리 과정의 투명성: 재정위원회는 재원의 마련과 할당에 관한 의사결정 및 관리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며, 특히 합의된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혜국 개발도상국의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개발도상국의 참여 강화: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 이행준수 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성 및 선출: 이행준수위원회는 적절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젠더와 지리적 배분에 공정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에 의해 추천되어 회원국 총회에서 선출된다.
- ② 투명성, 비사법적, 비징벌적 운영: 위원회는 투명하고 비사법적 그리고 비징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이행과 준수를 촉진하면서도 공정하고 압력적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③ 운영규칙 및 방법: 이행준수위원회의 운영은 회원국 총회에서 정한 절차 규칙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회원국 간의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보고 및 권고 역할: 위원회는 개별 국가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과 준수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회원국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이행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법 제안: 이행준수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마련하고, 회원국 총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다자협정에서 주로 설정되며, 이행과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3 제56조~제59조 분쟁의 방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등

제56조, 제57조, 제58조, 그리고 제59조는 협정에서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각 조항에 따라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

- ① 제56조 - 분쟁 방지 협력 의무:

회원국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반 의무를 가진다.

- ② 제57조 - 분쟁 해결 의무:

회원국은 다양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에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판정,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약정의 이용 등이 포함된다.

- ③ 제58조 - 회원국 간 합의: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회원국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 간 합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④ 제59조 - 기술적 성격의 문제에 관한 분쟁:

분쟁이 기술적 성격의 문제라면, 회원국은 분쟁회원국에 의해 설립된 특별 전문가 패널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회원국 간의 분쟁을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4 제60조 분쟁해결절차

기본적으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에 규정된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해결되도록 규정하여, 어느 일방의 제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제도 절차가

개시된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와 부속서 V(조정), VI(국제해양법재판소), VII(중재재판), VIII(특별중재재판) 조항은 협약 비회원국이며 이 협정 회원국이 연루된 분쟁해결 목적을 위하여 준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는 회원국에게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의 4가지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회원국이자 이 협정 회원국이 수락한 모든 절차는 이 부의 분쟁해결에도 적용되나 이 협정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이 협정 서명, 비준 등 또는 이후 언제라도 이 부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287조에 따라 협약 서명, 비준 시 했던 선택과 다른 절차를 수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협약 제287조에 따라 선택한 수단으로 BBNJ 협정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필요시 BBNJ 협정 분쟁을 위한 별도의 수단 선택도 가능토록 규정을 두고 있다.

협약 제298조에 따라, 협약 회원국이자 이 협정 회원국이 한 배제선언은 이 부의 분쟁해결에도 적용되나, 이 협정 서명 비준 등 또는 이후 언제라도 이 부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298조에 따라 다른 배제선언을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및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으로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한 분쟁 중에 회원국이 선택하여 협약 제15부 강제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서도 그 선언의 유효함을 규정한 것이다.

협약 비회원국이나 이 협정의 회원국은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이 협정 서명, 비준 등 또는 이후 언제라도 ① 국제해양법재판소, ② 국제사법재판소, ③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④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 중 하나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협약 비회원국이나 이 협정의 회원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회원국이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한 경우에는 서로 수락한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절차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제소되어야 한다.

협약 비회원국이나 이 협정 회원국은 서명, 비준 등 또는 이후 언제라도 협약 제298조 규정된 분쟁의 하나 또는 그 이상과 관련하여 협약 제15부 제2절의 절차를 수락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하여, 협약 비회원국일지라도, 이 협정의 회원국일 경우 협약 제298조에 규정된 범주의 분쟁일 경우 BBNJ 협정의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관련 법문서와 체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문서 또는 체계의 참여국 또는 관련 기구의 회원국으로 동의하였던 분쟁해결절차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관련 법문서, 체계, 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며, 해당 분쟁당사자가 관련 법문서, 체계, 기구의 분쟁해결절차를 사전에 수락한 경우에 해당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9조에 따라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법원 또는 재판소에 국가관할권 이내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려에 관한 또는 그러한 고려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분쟁 또는 이 협정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도서에 관한 주권 또는 기타 권리나 그러한 주장에 관한 분쟁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항은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X 제12부 최종조항

1 제61조 잠정협정

해당 규정은 분쟁 회원국이 BBNJ 협정에 따른 분쟁이 진행 중일 때, 양측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과 협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단순히 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양 측이 노력을 기울이되, 실제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제65조 서명

협약이 서명을 위한 개방기간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각 정부 간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정해지게 된다. BBNJ 협정의 경우, 협약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나면 유엔 회원국들이 서명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정부 간 회의나 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이 기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하여 설정된다.

제5차 BBNJ 정부 간 회의 속개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미래의 회의나 협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방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다른 국제협약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인다.

3 제68조 발효

이 협정은 60번째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0일 이후에 발효되며, 그 이후에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한 국가는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비준 국가가 협정에 동의하고 비준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협정이 발효되며, 그 이후에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한 국가는 기탁한 날로부터 추가적인 30일이 지나면 협정이 그 국가에 대해 발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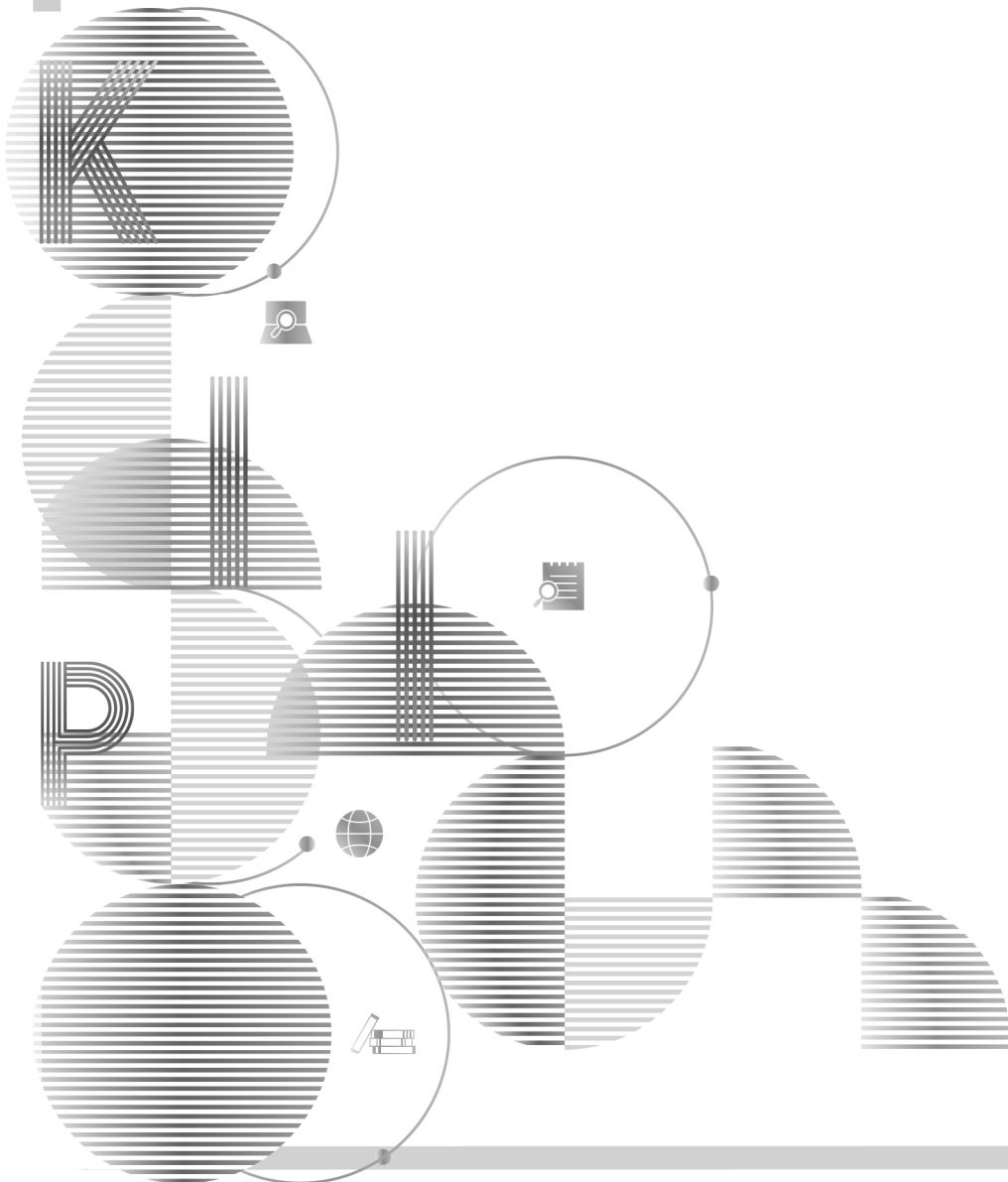
4 제69조 잠정적용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BBNJ 협정은 서명 또는 비준, 승인, 수락, 가입 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효 전에도 잠정적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협정을 서명하거나 비준, 승인, 수락, 가입할 때, 잠정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잠정적용은 종료된다는 내용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제4장

BBNJ협정과 지식재산 이슈

제1절 개요



제1절

개요

BBNJ 협정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제9조(목적), 제14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그리고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여러 조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제12조는 2023년 2월에 개최된 제5차 정부 간 회의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다양한 조항에 흩어져 있으며, 일부 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I | 지식재산 조항 삭제

1 BBNJ 협정문의 채택 기한

BBNJ 협정에서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슈가 복잡하게 다뤄지다가 최종 협정문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와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토론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협정의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려되고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슈는 WIPO IGC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으며, BBNJ 정부 간 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WIPO나 WTO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²¹⁾

2 A/CONF.232/2020/3의 제12조 지식재산 규정

A/CONF.232/2020/3의 제12조는 총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항은 회원국 간의 협

21) 실제로 지난 정부 간 회의에서 지식재산 관련 이슈는 WIPO와 WTO에서 다룰 이슈임으로 BBNJ 협정에서는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음.

력, 제2항은 해양유전자원의 특허 획득 요건, 제3항은 회원국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²²⁾

제12조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포함된 경우, 특허 출원 시에 해양유전자원 출처의 공개 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선진국에게 일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12조의 유지는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복잡한 서류 및 절차가 요구되면서 특허보다는 노하우나 영업비밀로의 지식재산 보호 경향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즉, 이는 선진국이 나름의 기술 또는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자 할 때 특허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특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재산 형태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허 이외의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제12조의 유지는 기술적 노하우나 기밀 정보를 통해 지식자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A/CONF.232/2020/3)

제1항 회원국은 지식재산권이 본 협정의 목적을 준수하고 위배하지 않도록 협력해야하며,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과 이익 공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함

제2항 본 협정에 따라 [수집되거나, 접근되거나, 이용된] 해양유전자원은 산업상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인위적으로 수정된 자원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음

제3항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함

- a.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한 자] [이용한 자]는 그들이 이용한 해양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함
- b. 제2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출원은 승인되지 않음

22)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to ensure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upportive of and do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 and that no action is taken in the contex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would undermine benefit-sharing and the traceability of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2. [Marine genetic resources [collected] [accessed]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ubject to patents except where such resources are modified by human intervention resulting in a product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Unless otherwise stated in a patent application or other official filing or recognized public registry, the origi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utilized in patented applications shall be presumed to be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3. States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ensure that:

(a) [Users of] [Applicants for patents on inventions that utilize or have utilized]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disclose the origin of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that they utilize;

(b)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plication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at do not comply with this Part are not approved.]

그러나 결국 A/CONF.232/2023/2의 제12조의 삭제로 인해 BBNJ 협정에서는 WIPO와 WTO와의 관련 협정들과의 관계²³⁾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사라졌다. 이는 기존 조항이 WIPO와 WTO에서 다루지는 지식재산 이슈와의 관련성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최종 협정에서는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WIPO IGC 조약에 따라 지식재산 이슈를 다루기로 결정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BBNJ 협정의 최종 텍스트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크게 축소되었거나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IPO IGC와 같은 다른 국제 조약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제 및 협력은 WIPO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WIPO IGC의 유전자원과 지식재산 쟁점 (출처공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WIPO IGC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이 발명과 실질적·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²⁴⁾ 여기서 출처란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의미하며, 원산국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이 해당 유전자원을 취득한 국가, 연구소, 유전자원은행, ITPGRFA 다자체제, 또는 기타 모든 *ex situ*(현지 외) 유전자원 소장처 또는 기탁처를 의미한다.²⁵⁾ 그리고 여기서 원산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대표적 예로 공해에서 취득한 유전자원을 명시하고 있다.²⁶⁾

WIPO IGC의 논의에 따르면, 현재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유전자원을 활용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과 발명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만 ITPGRFA의 다자체제나 다른 *ex situ* 유전자원 소장처 또는 기탁처를 공개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여 발명이 특정 지역의 자원에서 파생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조치이다.

23) Parties shall implement this Agreement and relevant agreements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a mutually supportive and consistent manner.

24) WIPO/GRTKF/IC/43/5 Article 3.1: Where the claimed invention in a patent application is [materially/directly] based on GR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applicants to disclose.

25) WIPO/GRTKF/IC/43/5 Article 2: "Source of Genetic Resources" refers to any source from which the applicant has obtained the GRs, such as a research centre, gene bank,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or any other *ex situ* collection or depository of GRs.

26) 'Sub paragraphs 3.1(b) and/or 3.2(b) apply in those cases where the information in sub paragraph 3.1(a) and/or 3.2(a) is not available or these sub-paragraphs do not apply, and thus it is not possible for the patent applicant to disclose this information. For example, GR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uch as the high seas'. WIPO/GRTKF/IC/43/5, 10 page.

또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교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처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은 WIPO IGC가 전통지식과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지식재산과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 및 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 | 유전자원 이익 공유와 기술이전의 문제

1 이익 공유의 의무화를 명시 및 금전적 이익 공유와 비금전적 이익 공유

제14조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BBNJ 협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특히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파생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혜택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이익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예를 들어 연구 결과, 지식 공유, 기술 이전, 교육 및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들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비금전적 이익 공유 유형(제14조 제2항)

유형(한글)	유형(영문)
현재 국제관행에 따라 샘플과 샘플 컬렉션에 대한 접근	Access to samples and sample collections in accordance with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현재 국제관행에 따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접근	Access to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현재 국제관행과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자료 관리에 따라,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할 수 있으며(accessible), 상호운용가능하며(interoperable), 재사용가능한(reusable) 과학적 자료에 대한 공개적 접근	Open access to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FAIR) scientific data in accordance with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 and open and responsible data governance
제12조에 따라 제공된 통보에 포함된 정보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notifications, along with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in publicly searchable and accessible forms
이 협정 제5부에 따라 규정된 방법과 일치하는 해양기술이전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line with relevant modalities provided under Part V of this Agreement

유형(한글)	유형(영문)
연구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는 역량강화	Capacity-building, including by financing research programmes, and partnership opportunities, particularly directly relevant and substantial ones, for scientists and researchers in research projects, as well as dedicated initiatives, in particular for developing Stat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특히, 개발도상국 과학연구소와 그 과학자와 증진된 과학기술 협력	Increased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n particular with scientists from and scientific institutions in developing States
회원국 총회가 결정하는 기타 형태	Other forms of benefits a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recommendation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2 금전적 이익 공유에 대한 판단

제14조 제2항은 비금전적 이익 공유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들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금전적 이익으로는 연구 결과의 공유, 지식 및 경험의 전달, 기술 이전, 교육 및 교류, 용어의 정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금전적 이익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동조 제6항을 도입하여 특별기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특별기금을 제공하며, 이 특별기금은 본 협정 제52조(재정)에 따라 설립된 재정체제에 매년 기여된다. 이 특별기금은 금전적 이익 공유의 임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이러한 특별기금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제14조 제7항은 금전적 이익 공유의 여러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항은 마일스톤 지불방식, 상품 판매 수입의 일정 비율 지불, 다양한 요소에 기초한 단계적 수수료 지불 방식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협정 자체에서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참석 국가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에 대한 협상에서 다양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 및 협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비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이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판단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내용은 해양기술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여러 항을 통해 해양기술의 개발, 이전, 협력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제42조 제1항은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의무화를 명시²⁷⁾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이 역량개발과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제42조 제2항에는 회원국은 역량개발과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할 때, 자국의 역량 범위 내에서 국내 정책과 우선순위, 계획과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²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의 정신에 따라 역량 개발 및 기술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43조 제2항은 해양기술이전은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최혜적 조건”, 그리고 “상호합의조건”과 본 협정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양기술이전이 상호 협의 하에 이뤄지며, 공정하고 최상의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²⁹⁾

선진국이 자국의 역량과 정책에 따라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해양기술이전이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협정의 합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선진국에게 유리한 기술이전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해양기술이전은 해당 기술의 모든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양기술의 소유자, 제공자, 그리고 수혜자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³⁰⁾ 특히, 상호합의에 기반 한 계약의 경우, 기술 소유자와 제공자 간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존 법규 및 권리, 의무를 명확히 포함시킬 수 있다. 이로써 지식재산 권리자의 보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27) 그간 선진국 그룹은 자발적인 기술이전을 주장한 반면 제공국 그룹은 기술이전 의무화를 주장하였음.

28) A/CONF.232/2023/4 Article 42.4: ... taking into account their national policies, priorities, plans and programmes.

29) 그간 BBNJ 정부 간 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에 개진했던 주장이 관철된 결과임.

30)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such technologies and be carried out with due regard for all legitimate interests, including, inter alia, the rights and duties of holders, suppliers and recipients of marine technology and taking into particular consideration the interests and needs of developing States for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III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및 분쟁해결

1 분쟁해결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본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분쟁해결 절차는 한 측의 제소에 따라 개시된다.

게다가, 분쟁의 회원국 중 최소 1개 국가가 본 협정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와 그 부속서 V(조정), VI(국제해양법재판소), VII(중재재판), VIII(특별중재재판)이 준용된다. 이는 해당 국가가 협정의 회원국으로서 특정 분쟁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4가지 분쟁해결수단

제287조 제2항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회원국은 미리 4가지 유형, 즉 ① 국제해양법재판소, ② 국제사법재판소, ③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④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이 4가지 수단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수단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은 후에 서로 다른 해결 절차를 합의할 수 있다. 즉, BBNJ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BBNJ 협정에 따르면, 해당 협정의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인 국가는 분쟁해결에 관한 선언을 할 수 있다. 이 배제선언은 BBNJ 협정 분쟁에 적용되며,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라 이후 다른 내용의 배제선언 역시 할 수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비회원국이지만 BBNJ 협정의 회원국인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규정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BBNJ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거부하는 선언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는 BBNJ 협정의 분쟁해결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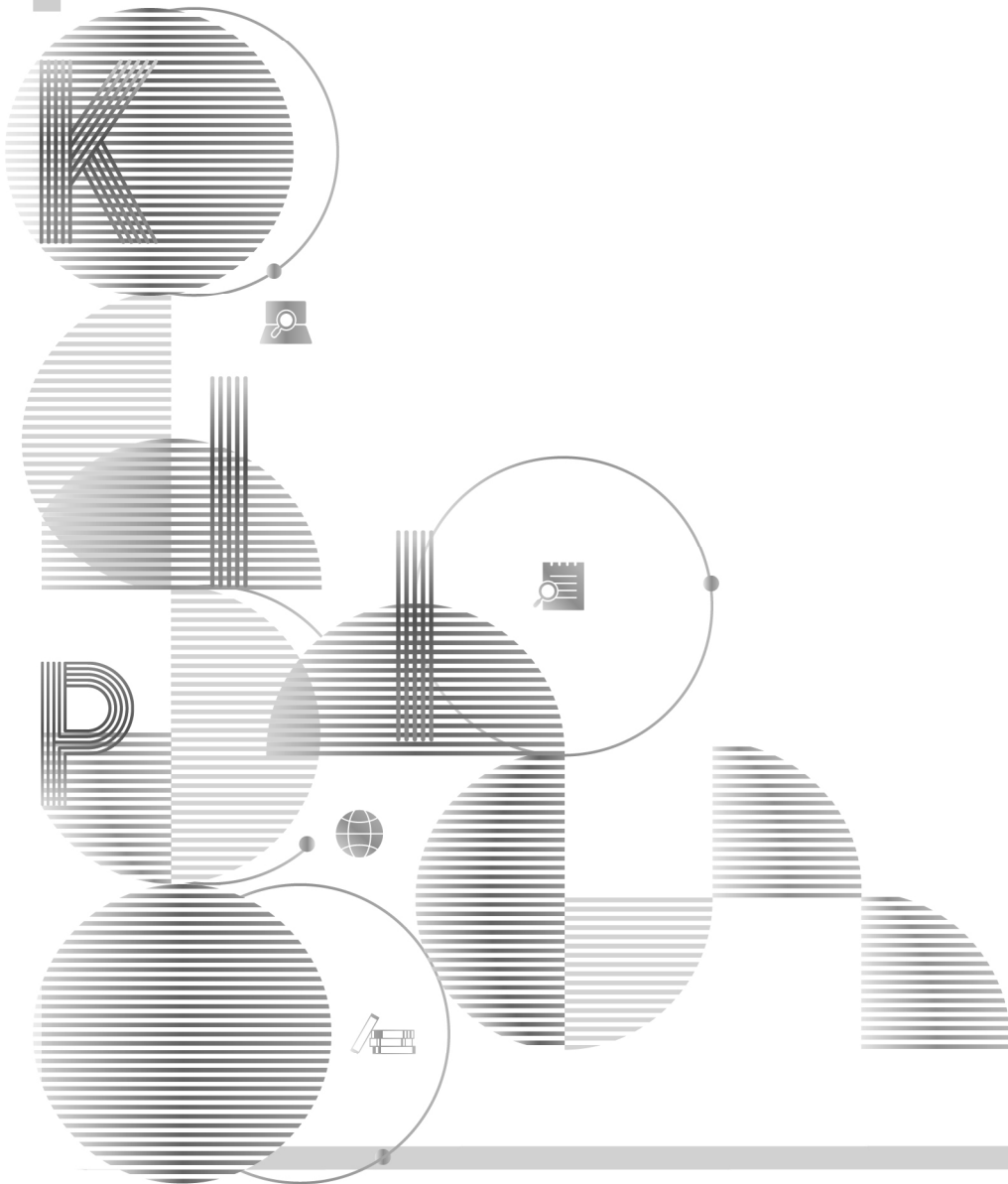
3 적용범위 공백

제60조 제9항은 주로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국가의 관할권 이내의 지역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 영유권이나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른 섬의 법적 지위,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에 관한 분쟁 등과 관련된 해양 및 영토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규정은 단순히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관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 공해와 심해저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BBNJ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협정이 특정 지역에서의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5장

결론



해양유전자원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종의 80%를 차지하는 해양이 보유한 유전자원은 현재 활용률이 1% 미만이지만 미래에 걸쳐 거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양유전자원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 소재활용 기반 구축 연구개발 사업(2021~2025)’을 발표하여 해양유전자원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해양유전자원의 현황과 관련 특허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최신 보고서를 활용하여 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 해양유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기엔 상당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점과 관련 특허활동을 파악하기에 곤란한 이유들이 산재되어 있어 시의성 있는 데이터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WIPO의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s’를 통해 동남아시아지역 해양유전자원 현황과 관련 특허활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해양유전자원 중 동물의 종수가 가장 많으며, 특히 이 중 달팽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뒤로는 조기아강, 연갑류, 이매패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해양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순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생물 관련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1,523건으로 가장 많으며,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가 1,121건으로 그 뒤를 이어 나타난다. PCT 출원을 통한 특허기구는 507건을 기록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773건(약 50%)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518건(약 34%), 우리나라가 227건(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113건(약 99%)으로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럽 특허청, 영국, 독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이 뒤를 이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허 권리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북아메리카가 11,595건으로 가장 높은 수를 기록했다. 동아시아(우리나라, 일본, 중국)가 8,408건으로 그 뒤를 이어 특허 수요가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허기구는 7,905건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이어서 호주(3,020건), 남아프리카(1,352건), 서유럽(1,142건), 북유럽(885건)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유전자원의 기술적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생물공학과 약학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생물공학 및 유전공학에 활용되는 해양유전자원의 종류는 1,744개로, 이와 관련한 특허 출원 건수는 1,892건이다. 또한, 제약 분야에서도 해양유전자원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종류는 1,595개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는 1,546건이다. 이외에도 해양유전자원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해양유전자원은 미래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소재로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

재성을 갖고 있어 전 세계 국가들이 이에 대한 권리 확보와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관할권 이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원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해양유전자원의 대다수는 ABNJ에 위치해 있어 BBNJ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공해상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조약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에 개최된 BBNJ 정부 간 회의에서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문’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명이 이루어지면 국제 조약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BBNJ 협정은 전 세계의 바다 표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국제 공해의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19년간의 논의 끝에 도달한 결정이기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공해와 심해저 등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구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며, 공해 등에서 비롯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해로부터 얻은 해양유전자원과 그 정보에 대한 이용 내역을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BBNJ 협정 검토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협정의 논의과정에서는 CBD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기존의 ABS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ABS 시스템은 양자 간 이익 공유체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본 협정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자 간 이익 공유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유전자원에 관련된 활동의 모니터링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이익 공유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이 협정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채집 전, 채집 후, 이용이라는 각 활동 단계별로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처 식별을 위한 BBNJ 표준배치식별자를 도입하여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로써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이익 공유에 대한 확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절차를 완비하고자 한다. 본 협정은 제3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과 제4부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각 부의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과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 협정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사국총회는 다른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존 및 보호 구역의 설치를 통해 공해로부터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회원국에게 주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보존 목적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은 당사국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스크리닝, 모니터링 및 검토 단계에서는 과학기술기구 및 다른 당사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략적 환경평가는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려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이를 수행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 공유와 해양기술이전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BNJ 정부 간 회의는 금전적 이익 공유 의무를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 총회 참석 국가의 3/4 이상이 동의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당수의 국가들이 동의하는 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에는 비금전적 이익 공유 방법이 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의무화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할 때에는 제공국의 역량, 국내 정책과 우선순위, 계획과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선진국(제공국)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60조를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관할권 이내의 유전자원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경우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BBNJ 협정은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을 제60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자세한 관계도 명시하고 있다.

BBNJ 협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체제의 운영 방안과 절차, 가이드라인 등은 채택 후 개최될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협정안이 채택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협정안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이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당사국 총회에서의 논의는 각 국가 및 이해당사국 간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 관리, 감시 체제, 기술 이전, 이해당사국 간 협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논의될 것이며, 이는 BBNJ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WIPO IGC의 결정을 준수하기로 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 출원 시 출처 공개에 관한 부분은 지식재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BBNJ 협정의 정신과 일치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24년 WIPO IGC와 관련된 외교 회의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이슈들이 다뤄질 것이며, BBNJ 협정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과 대응이 논의될 것이다. 그러므로 BBNJ 협정의 발전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주제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경, “생태계기반 접근법과 BBNJ 국제문서 간 상호관계 연구: 지역기반관리수단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6.2 (2021): 7-40.
- 김영모, 양세희, “BBNJ 협정문 채택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 검토”, IP Focus 2023-15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08.10.).
- Arrieta, Jesus & Arnaud-Haond, Sophie & Duarte, Carlos. (2010). “What lies underneath: Conserving the oceans’ genetic resour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 18318-24.
-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CONF.232/2023/4, 2023.
-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U.N.Doc. A/RES/69/292, 2015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GRTKF/IC/43/5, 2022.
- Letter dated 13 February 2015 from the Co-Chairs of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Doc. A/69/780, 2015.
- UN General Assembly,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A/62/66, March 12, 2007.
- 머니투데이, ‘투자자라면...이젠 생물다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2022.10.0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915191793269> (2023. 10. 10. 최종검색)
- WIPO, “Patent Landscape Report: Marine Genetic Resource”, 2019,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98> (2023. 10. 10. 최종검색)
- Lifewatch Belgium 웹 서비스 <https://www.lifewatch.be/> (2023. 10. 10. 최종검색)

법·제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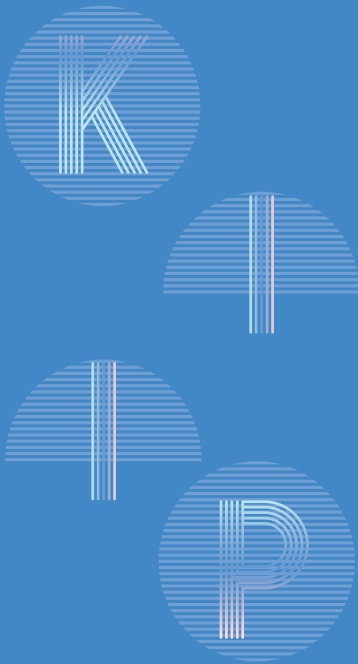
해양유전자원 ABS에 관한 국제 레짐과
지식재산 이슈
- BBNJ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인 손승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법제도 연구

해양유전자원 ABS에 관한 국제 레짐과 지식재산 이슈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8
<http://www.kiip.re.kr>

ISBN : 979-11-6884-136-9
DOI : 10.8080/P9791168841369